

당신의



덴탈파트너 자동갱신형

무 배 당 삼 성 화 재 치 아 보 험

1904.4

보험료갱신형

(보험료 변동가능)



이 상품은 자동갱신형 상품으로
보험기간 만기시에 자동갱신되며,
(단,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까지 보장)
매 갱신시마다 보험나이 증가 및 적용기초율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

당신에게 좋은보험 삼성화재

SAMSUNG

보험약관 쉽게 이해하기

√ 보험약관은 중요합니다.

- 보험약관에는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회사와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필요시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약관은 법규정에 따라 작성됩니다.

- 보험약관은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에 마련된 표준약관(별표 15)을 준용하여 금융감독원의 감독下에 작성됩니다.

√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약관의 전체적인 구성을 먼저 이해하신 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받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약관은 보험 가이드편과 보험약관 및 고객 안내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험 가이드편	보험 약관	고객 안내사항
· 목 차 · 보험용어 해설 · 주요내용 요약서 · 가입자 유의사항 · 본 상품 주요내용	· 보통약관 · 특별약관 · 별 표	· 개인신용정보 제공 · 이용 고객권리 안내문 · 주요 전화번호 / 주소

- ☞ 삼성화재 홈페이지 (www.samsungfire.com) 내 상품공시실에서도 보험약관과 상품요약서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목 차

보험약관 쉽게 이해하기.....	I - 1
보험용어 해설.....	I - 3
주요내용 요약서.....	I - 5
가입자 유의사항.....	I - 8
주요내용.....	I - 14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I - 41
<참고>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II - 1

보험용어 해설

보험약관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하며,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보험계약일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애, 입원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보장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

적립보험료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

적립부분 순보험료

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해지환급금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보험나이

- 1)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월 단위까지 계산 후, 6개월 미만은 버림, 6개월 이상은 반올림한 나이
- 2) 계약일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함

주요내용 요약서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제1회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계약취소

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계약의 무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이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나이가 계약에서 정한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계약의 소멸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무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의해 보험계약이 다시 효력을 갖더라도,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시점 이전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중도인출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2년 이후 계약이 유효한 경우 매 보험년도마다 4회에 한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인출시점의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단, 기본계약 해지환급금이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본계약 해지환급금을 한도로 하며, 이 약관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이 있을 경우 그 원금과 이자합계액 및 이미 중도인출을 한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80%한도 내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①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셔야 합니다.(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②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약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보험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셔야 합니다.

보험금의 지급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회사가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등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만약 지급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시이율 관련

공시이율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되며,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amsungfire.com>)를 통해 공시합니다.

이 주요내용 요약서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배당 삼성화재 치아보험 덴탈파트너(1904.4)(자동갱신형)의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모집인에게 구두(말)로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판매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치아치료 보장개시일

-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치아치료 보장개시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장명	보장개시일	
·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비 · 특정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비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치아영상진단비(X-ray 및 파노라마 촬영) · 치수치료(신경치료)비(상해 및 질병) (유치·영구치) · 치아보존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 (유치·영구치)(크라운 연간3개한) · 치아보존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 (유치·영구치)(크라운 무제한)	질병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발치 치료비 · 치아보철 치료지원금 (상해 및 질병)(영구치) · 영구치아 상실위로금 ·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 (상해 및 질병)(영구치) ·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II (상해 및 질병)(영구치) · 어린이 치아치료보장 (발치/영구치상실/보철/치조골이식)	상해	부활(효력회복)일

건강보험

- 이 보험이 상해 등 외래의 사고만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지, 질병도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하는지, 몇 세까지 보장하는지 등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갱신형 상품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은 일정기간(예:기본계약의 보험기간 20년)마다 자동으로 갱신되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는 갱신시 나이증가 및 적용요율의 변동(위험률 변동 등)에 따라 인상될 수 있으며, 갱신할 때에는 변경된 갱신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여야 계약이 정상유지 됩니다.

면책기간 및 감액지급 관련 특별약관에 관한 사항

-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비 보통약관 및 특정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비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최초 보험가입 또는 부활(효력회복) 후 일정기간 보장하지 않는 기간이 90일입니다.
- 치아영상진단비(X-ray 및 파노라마 촬영), 치수치료(신경치료)비(상해 및 질병)(유치·영구치), 치아보존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유치·영구치)(크라운 연간3개한), 치아보존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유치·영구치)(크라운 무제한), 발치 치료비, 치아보철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영구치), 영구치아 상실위로금,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상해 및 질병)(영구치),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Ⅱ(상해 및 질병)(영구치) 또는 어린이 치아치료보장(발치/영구치상실/보철/치조골이식)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 최초 보험가입 또는 부활(효력회복) 후 일정기간 보장하지 않는 기간이 90일입니다. 다만,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치아보존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유치·영구치)(크라운 연간3개한), 치아보존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유치·영구치)(크라운 무제한) 특별약관은 최초 보험가입 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하는 보장입니다. 다만,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감액 지급하지 않습니다.

- 치아보철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영구치),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상해 및 질병)(영구치) 또는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Ⅱ(상해 및 질병)(영구치) 특별약관은 최초 보험가입 후 2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하는 보장입니다. 다만,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감액 지급하지 않습니다.
- 어린이 치아치료보장(발치/영구치상실/보철/치조골이식) 특별약관의 치아보철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영구치) 세부보장,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상해 및 질병)(영구치) 세부보장은 최초 보험가입 후 2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하는 보장입니다. 다만,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감액 지급하지 않습니다.

√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중도인출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치아 관련 보장

-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 및 특정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 관련 보장에 가입한 경우 최초 보험가입 또는 부활(효력회복)일 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치아 영상진단(X-ray 및 파노라마 촬영), 발치치료, 치수치료(신경치료), 보존치료, 보철치료, 영구치아 상실,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 또는 어린이 치아치료(발치/영구치상실/보철/치조골이식) 관련 보장에 가입한 경우 최초 보험가입 또는 부활(효력회복)일 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9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질병으로 인한 보존치료일이 보험계약일 부터 일정기간(예: 1년 등) 이내인 경우 보험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습니다.
- 9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질병으로 인한 보철치료일이 보험계약일 부터 일정기간(예: 2년 등) 이내인 경우 보험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습니다.
- 9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질병으로 인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일이 보험계약일부터 일정기간(예: 2년 등) 이내인 경우 보험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주요민원사항

제목	보철치료(임플란트, 브릿지, 틀니)의 보장기준일
내용	평소 치아보험에 관심이 많아 치아보험 상품을 알아보던 A고객은 삼성화재 모집인으로부터 치아보험에 대해 가입 권유를 받고 보험을 가입함 A고객은 계약일부터 2년 이후에는 영구치 발거 후 보철치료(임플란트, 브릿지, 틀니)를 하는 경우, 해당 보장금액의 100%가 보장된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함 충치가 심해진 A씨는 가입 후 즉시 영구치를 발거하였으나, 2년 뒤 보철치료가 보장된다는 말이 생각나 계약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됨
유의사항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등 보철치료의 경우 영구치 발거(발치)일을 기준으로 보장되며,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등의 보철치료를 한 날과 다릅니다. 또한,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인한 보철치료(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및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보장개시일)부터 2년까지 해당 치료 보험금의 50%가 지급됩니다. 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한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이며 해당 치료 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참고로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인한 보존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보장개시일)부터 1년까지 해당 치료 보험금의 50%가 지급됩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보험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이미 크라운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한 보장기준
내용	평소 치아보험에 관심이 많았던 치아보험 상품을 알아보던 B고객은 삼성화재 모집인으로부터 치아보험에 대한 가입 권유를 받고 가입함 B고객은 이미 크라운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에도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안내를 받았음 B씨는 보험 가입 전 이미 크라운 치료를 받았던 부분이 파손되어 수리, 복구, 대체의 목적으로 새로운 크라운으로 재 장착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됨
유의사항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미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는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에만 해당 치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약관의 주요내용을 요약·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배당 삼성화재 치아보험 덴탈파트너(1904.4)(자동갱신형)의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무배당 삼성화재 치아보험 덴탈파트너(1904.4)(자동갱신형) 주요내용

● 문답식 상품해설 (Q &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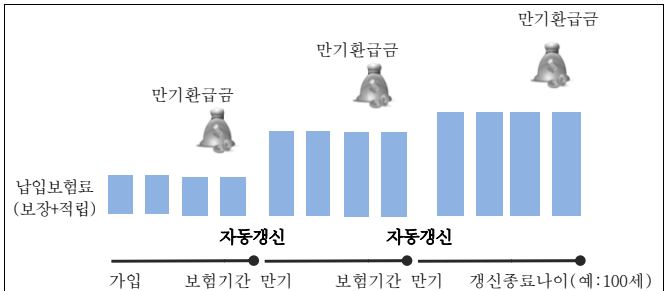
Q)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요?

A) 무배당 삼성화재 치아보험 덴탈파트너(1904.4)(자동갱신형)은 가계 의료비 지출비중이 높은 치과치료에 대해 포괄적으로 보장해 주는 상품입니다. 치석제거(스케일링), 치아영상진단(X-ray 및 파노라마 촬영), 치수치료(신경치료), 특정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 발치치료, 치아보존치료, 치아보철 치료 및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 등 다양한 치과치료와 상해로 인한 골절진단을 폭넓게 보장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만기 자동갱신형 상품은 무엇이고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A1) 자동갱신형 상품은 최초가입후 일정기간(예:기본계약의 보험기간 20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예:갱신종료나이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 갱신계약의 보장은 갱신전 계약의 보장이 끝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 갱신전 계약에서 기본계약 및 특별약관의 소멸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차회 이후의 갱신시에는 해당 기본계약 및 특별약관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A2) 회사는 계약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 1) 갱신될 계약의 보험기간이 회사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기간내 일 것
- 2) 갱신일에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 3)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A3) **갱신시**에는 나이증가 및 적용요율의 변동(위험률 변동 등) 등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자에게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갱신 요건, 보장내용 변경내역, 갱신보험료 및 갱신 절차 등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이 상품의 보장 중 면책기간이 있는 보장과 최초 보험가입 후 정해진 기간(1년 또는 2년) 미만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50% 감액 지급하는 보장이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이 상품의 보장 중 최초 보험가입 또는 부활(효력회복) 후 일정기간 보장하지 않는 기간(면책기간)이 있는 보장과 최초 보험가입 후 정해진 기간(1년 또는 2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하는 보장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보장명	최초 보험가입 또는 부활(효력 회복) 후 면책기간	최초 보험가입 후 정해진 기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비	90일	×
치아영상진단비 (X-ray 및 파노라마 촬영) ^{주)}	90일	×
치수치료(신경치료)비 (상해 및 질병)(유치·영구치) ^{주)}	90일	×
치아보존 치료지원금 (상해 및 질병)(유치·영구치) (크라운 연간3개한) ^{주)}	90일	○ (1년)
치아보존 치료지원금 (상해 및 질병)(유치·영구치) (크라운 무제한) ^{주)}	90일	○ (1년)
특정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비	90일	×
발치 치료비 ^{주)}	90일	×
치아보철 치료지원금 (상해 및 질병)(영구치) ^{주)}	90일	○ (2년)
영구치아 상실위로금 ^{주)}	90일	×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 (상해 및 질병)(영구치) ^{주)}	90일	○ (2년)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Ⅱ (상해 및 질병)(영구치) ^{주)}	90일	○ (2년)

보장명		최초 보험가입 또는 부활(효력 회복) 후 면책기간	최초 보험가입 후 정해진 기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감액 지급
어린이 치아치료보장 (발치/영구치 상실/보철/ 치조골이식) ^{주)}	발치 치료비 ^{주)}	90일	×
	영구치아 상실위로금 ^{주)}	90일	×
	치아보철 치료지원금 ^{주)} (상해 및 질병)(영구치)	90일	○ (2년)
	특정 임플란트 ^{주)}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 (상해 및 질병)(영구치)	90일	○ (2년)

주) 상해로 인한 치료의 경우 면책기간 및 감액기간 없음

Q) 이 상품의 만기환급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1) 회사는 이 보험의 기본계약 만기시점의 적립금을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하며 공시이율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 실제 납입일자, 중도인출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만기환급금은 최초 가입시 예시한 금액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2) 회사는 일정기간(예:기본계약의 보험기간 20년)마다 갱신전 계약에서 만기환급금이 있는 경우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해당기간 동안 적립된 만기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Q) 계약내용이 다른 법률과 연계되어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닌 계약의 경우 관련 법률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나요?

A1) 네. 있습니다. 계약내용이 다른 법률과 보험금 지급사유가 연계되는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회사의 자체적인 기준이 아님에 따라 관련 법률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①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 ②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관련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
- ④ ① 내지 ③ 이외의 법률의 개정 등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⑤ 기타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A2)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거나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A3) 회사는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알립니다.

●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

□ 가입자격제한

무배당 삼성화재 치아보험 덴탈파트너(1904.4)(자동갱신형)의 가입이 가능한 나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최초계약

구 분		보험 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기본 계약	·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비	20년	전기납	2세~65세
		15년		
		10년	전기납	2세~70세
		5년		
선택 계약	· 치아영상진단비(X-ray 및 파노라마 촬영) · 치수치료(신경치료)비(상해 및 질병)(유치·영구치) · 치아보존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유치·영구치) (크라운 연간3개한) · 치아보존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유치·영구치) (크라운 무제한) · 특정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비 · 발치 치료비 · 자동차사고 치아보철·크라운치료지원금 · 골절 진단비	20년	전기납	2세~65세
		15년		
		10년	전기납	2세~70세
		5년		
	· 치아보철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영구치) · 영구치아 상실위로금	20년	전기납	6세~65세
		15년		
		10년	전기납	6세~70세
		5년		
	·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 (상해 및 질병)(영구치) ·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Ⅱ (상해 및 질병)(영구치)	20년	전기납	6세~65세
		15년		
		10년	전기납	6세~70세
		5년		
	· 어린이 치아치료보장 (발치/영구치상실/보철/치조골이식)	20년	전기납	2세~14세
		15년		
		10년		
		5년		

주) 5년만기는 통신판매(TM) 채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2) 갱신계약

구 분		보험 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갱신나이	갱신 종료 나이
기본 계약	·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비	20년	전기납	22세~80세	100세
		15년		17세~85세	
		10년		12세~90세	
		5년		7세~95세	
		16 ~19년		(100 - 보험기간)세	
		11 ~14년			
		6~9년			
		1~4년			
선택 계약	· 치아영상진단비 (X-ray 및 파노라마 촬영) · 치수치료(신경치료)비(상해 및 질병) (유치 · 영구치) · 치아보존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 (유치 · 영구치)(크라운 연간3개한) · 치아보존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 (유치 · 영구치)(크라운 무제한) · 특정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비 · 발치 치료비 · 자동차사고 치아보철 · 크라운치료 지원금 · 골절 진단비	20년	전기납	22세~80세	100세
		15년		17세~85세	
		10년		12세~90세	
		5년		7세~95세	
		16 ~19년		(100 - 보험기간)세	
		11 ~14년			
		6~9년			
		1~4년			

구 분		보험 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갱신나이	갱신 종료 나이
선택 계약	· 치아보철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 (영구치) · 영구치아 상실위로금	20년	전기납	26세~80세	100세
		15년		21세~85세	
		10년		16세~90세	
		5년		11세~95세	
		16 ~19년		(100 - 보험기간)세	
		11 ~14년			
		6~9년			
		1~4년			
	·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 (상해 및 질병)(영구치) ·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Ⅱ (상해 및 질병)(영구치)	20년	전기납	35세~80세	100세
		15년		30세~85세	
		10년		25세~90세	
		5년		20세~95세	
		16 ~19년		(100 - 보험기간)세	
		11 ~14년			
		6~9년			
		1~4년			

구 분		보험 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갱신나이	갱신 종료 나이
선택 계약	· 어린이 치아치료보장 (발치/영구치상실/보철/치조골이식)	20년	전기납	22세~80세	100세
		15년		17세~85세	
		10년		12세~90세	
		5년		7세~95세	
		16 ~19년		(100 - 보험기간)세	
		11 ~14년			
		6~9년			
		1~4년			

이 상품은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 또는 보험료가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상품구조

1) 계약형태

보험기간	가입자격제한 참조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2) 만기환급금

- 보장부분 : 없음
- 적립부분 :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적립한 금액에서 이미 중도인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만기까지 적립한 금액(단, 최저보증이율 연단위 복리 0.5%)

3) 중도인출

- (1)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2년 이후에 계약이 유효한 경우 매보험년도마다 4회에 한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인출시점의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단, 기본계약 해지환급금이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본계약 해지환급금을 한도로 하며, 이 약관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이 있을 경우 그 원금과 이자합계액 및 이미 중도인출을 한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80%한도 내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 (2) (1)에도 불구하고 계약일부터 10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각 인출시점까지의 인출금액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상품의 특이사항

- 1) 어린이 치아치료보장(발치/영구치상실/보철/치조골이식) 특별약관은 아래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발치 치료비 · 영구치아 상실위로금 · 치아보철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영구치) ·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상해 및 질병)(영구치)

- 2)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상해 및 질병)(영구치) 특별약관 및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Ⅱ(상해 및 질병)(영구치) 특별약관은 치아보철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영구치) 특별약관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 3) 치아보존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유치·영구치)(크라운 연간3개한) 특별약관은 치아보존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유치·영구치)(크라운 무제한) 특별약관과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4)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상해 및 질병)(영구치) 특별약관은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Ⅱ(상해 및 질병)(영구치) 특별약관과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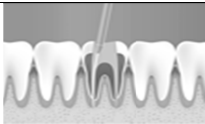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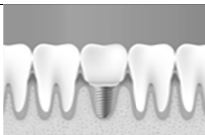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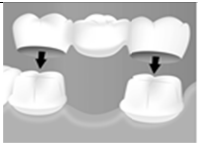
5) 주요 치아관련 용어해설

용어	정의
자연치	타고난 이를 인공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자연적으로 난 치아를 말합니다. 단, 자연적으로 난 치아 중 치아수복물 및 치아보철물을 제외한 부분에 한합니다.
영구치	유치(젖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 치아를 말합니다. 단,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 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 치아)는 제외합니다.
유치	젖먹이 때 나서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치아를 말합니다.
치아우식증(충치)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2(치아우식), K04(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충치라고 합니다. 치아우식증은 치아의 석회 성분이 녹거나 파괴되었을 때 또는 이로 인한 치수염 등의 원인으로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이 손상되어 치아를 잃게 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치주질환 (잇몸질환)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5(치은염 및 치주질환)에 해당되며, 일반적으로 잇몸병이라고 합니다. 치주질환은 크게 치은(잇몸)염과 치주염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염증 반응이 치은 조직에만 국한했을 때에는 치은염이라고 하고, 치은염을 방치해 치주 인대와 치조골이 파괴되었을 때를 치주염이라 말합니다.
아말감	치아를 보존하는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구리, 주석, 은 등의 합금과 수은의 혼합체를 말합니다.
글래스아이노머	치아를 보존하는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주로 산 부식처리가 필요 없는 화학 점착으로 처리된 치과재료를 말합니다.
복합레진	구강 충전 혹은 수복재료로 사용되는 치과용 플라스틱 레진(수지)을 말합니다.
인레이 또는 온레이	제거된 치아부위의 본을 떠서 치과용 합금을 이용하여 장착하는 방식으로 치아의 일부를 회복하는 치료방법을 말합니다.
크라운	치관장착 치료를 말하며 치아에 손상이 생겨 삭제량이 많은 경우 또는 신경치료로 인해 치아의 강도가 약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치아의 전체를 금속 등의 재료로 씌우는 치료방법을 말합니다.
영구치 발거	의사가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영구치를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영구치를 뽑거나 제거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용어	정의
임플란트 (Implant)	점막 또는 골막층 하방, 그리고 골조직 내부 등의 구강 조직에 이물 성형재료를 매식한 후 고정성 또는 가철성 보철물을 삽입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가철성의치 (틀니, Denture)	일반적으로 틀니를 말하며, 영구치와 그와 연관된 조직이 결손 되었을 때, 인공적으로 대체하는 보철물을 장착하는 시술로서 국소의치와 총의치를 포함합니다. 국소의치(부분틀니, Partial Denture)는 전체 치아가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치아와 그 관련조직의 결손을 수복해주는 보철물을 말하며, 금관, 지대치 혹은 다른 고정성 가공의치(브릿지, Bridge) 및 점막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총의치(Complete Denture)는 영구치가 하나도 없는 환자에게 인공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하는 의치를 말하며, 영구치 또는 인공치의 치열 전체, 보통 상실(喪失)한 영구치와 주위 조직을 대신하는 인공 보철물입니다.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Bridge)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다리처럼 연결하여 보철물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치아가 결손이 되어 있을 때 결손이 된 부분에 대해 인접한 영구치를 지대치로 하고, 가공치를 지대치와 연결하여 구강 내에 영구접착 되는 보철물을 말합니다.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치료	임플란트를 시술할 목적으로 치조골(잇몸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이식재료(자가골,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등)를 이용하여 치조골(잇몸뼈)를 이식하는 시술로서 아래에 정한 골이식(BBG, Block Bone Graft), 골유도재생술(GBR, Guided Bone Regeneration) 및 상악동거상술(SL, Sinus Lifting)을 말합니다. 1. 골이식술(BBG, Block Bone Graft) : 골이식재를 치조골(잇몸뼈)이 부족한 부위에 이식하여 뼈를 형성해주는 방법을 말합니다. 2. 골유도재생술(GBR, Guided Bone Regeneration) : 뼈를 이식하고 그 공간에 잇몸 등의 다른 조직들이 차오르지 않고 뼈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차오를 수 있도록 막을 씌워 골 재생을 유도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3. 상악동거상술(SL, Sinus Lifting) : 상악 어금니 부위의 임플란트 시술에 적용되는 시술로서 상악동을 상부로 밀어올려 그 곳에 골이식을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측면에서 치조골(잇몸뼈)를 동그랗게 뚫어 접근하는 방법과 임플란트가 식립될 부분에 상악동을 밀어넣어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기타 정의되지 않은 용어 및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이해하기 어려운 치과치료 용어풀이

용어		설명	해당 그림
치수치료 (신경치료)		감염된 치수(신경) 조직을 제거하는 치료	
보존 치료	충전 치료	치아에 손상이 생기는 경우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복합레진, 금 또는 세라믹 등을 이용하여 손상된 부위를 메우는 치료	
	크라운 치료	치아에 손상이 생기는 경우 금 또는 세라믹 등의 재료를 이용하여 치아 전체를 씌우는 치료	
임플란트 (Implant)		치아가 빠졌을 때 빠진 치아 자리에 인공뿌리를 삽입 후 보철물을 삽입하는 치료	
가철성의치 (틀니, Denture)	완전틀니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 제작하는 틀니 종류	
	부분틀니	부분적으로 결손된 치아를 대치하는 틀니 종류	
고정성 가공의치 (브릿지, Bridge)		치아가 빠졌을 때 양 옆 치아 사이를 다리처럼 연결 보철물을 제작하는 치료	
골이식술 (BBG, Block Bone Graft)		골이식재(잇몸뼈)가 부족한 부위에 이식하여 뼈를 형성해주는 기술	

골유도 재생술(GBR, Guided Bone Regeneration)	뼈를 이식하고 그 공간에 잇몸 등의 다른 조직들이 차오르지 않고 뼈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차오를 수 있도록 차단막을 씌워 골 재생을 유도하는 기술	
상악동 거상술 (SL, Sinus Lifting)	상악(위턱) 어금니 부위 임플란트 시술에 적용되는 기술로서 상악동(부비강의 윗부분)을 상부로 밀어올려 그 곳에 골이식을 하는 기술	

●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기본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치석제거 (스케일링) 치료비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 정한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지급 (연간 1회한) ※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임

◆ 선택계약

보장명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치아영상 진단비 (X-ray 및 파노라마 촬영)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 정한 치아영상진단(X-ray 및 파노라마 촬영)을 받은 경우 촬영 1회당 가입금액 지급 ※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임(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아영상진단(X-ray 및 파노라마 촬영)을 받은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치수치료 (신경치료)비 (상해 및 질병) (유치 · 영구치)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받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진단 확정받은 후 해당 치아(유치 또는 영구치)에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 1개당 가입금액 지급 ※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보장명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치아보존 치료지원금 (상해 및 질병) (유치·영구치) (크라운 연간3개한)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받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치아(유치 또는 영구치)에 치아보존치 료를 받은 경우 치아 1개당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①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지 급 기 준	지급금액		지급 한도	
			최초 계약			갱신 계약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 부터 가입후 1년미만	가입후 1년이상		
	아말감 또는 글래스 아이노머	치 아 당	가입금액의 2.5%	가입금액의 5%	가입금액의 5%	한도 없음
	복합레진		가입금액의 25%	가입금액의 50%	가입금액의 50%	
	인레이 /온레이		가입금액의 30%	가입금액의 60%	가입금액의 60%	
	크라운		가입금액의 50%	가입금액의 100%	가입금액의 100%	유치/ 영구치 각각 연간 3개
	② 상해로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지 급 기 준	지급금액		지급 한도	
	아말감 또는 글래스 아이노머	치 아 당	가입금액의 5%		한도 없음	
	복합레진		가입금액의 50%			
	인레이 /온레이		가입금액의 60%			
	크라운		가입금액의 100%		유치/ 영구치 각각 연간 3개	
	※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임(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보장명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치아보존 치료지원금 (상해 및 질병) (유치·영구치) (크라운 무제한)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받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치아(유치 또는 영구치)에 치아보존치 료를 받은 경우 치아 1개당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①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지 급 기 준	지급금액			지급 한도
			최초 계약		갱신 계약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 부터 가입후 1년미만	가입후 1년이상		
	아말감 또는 글래스 아이노머	치 아 당	가입금액의 2.5%	가입금액의 5%	가입금액의 5%	한도 없음
	복합레진		가입금액의 25%	가입금액의 50%	가입금액의 50%	
	인레이 /온레이		가입금액의 30%	가입금액의 60%	가입금액의 60%	
	크라운		가입금액의 50%	가입금액의 100%	가입금액의 100%	
	② 상해로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지 급 기 준	지급금액			지급 한도
	아말감 또는 글래스 아이노머	치 아 당	가입금액의 5%			한도 없음
	복합레진		가입금액의 50%			
	인레이 /온레이		가입금액의 60%			
	크라운		가입금액의 100%			
	※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임(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보장명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특정 치주질환 (잇몸질환) 치료비	보장개시일 이후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확정 받고, 약관에 정한 특정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내용별 지급기준에 따라 가입금액 지급 ※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								
발치 치료비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 정한 발치(단순, 정교, 완전매복치)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 1개당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지급금액</th></tr> </thead> <tbody> <tr> <td>단순 발치 (맹출치아 및 노출된 치근)</td><td>가입금액의 25%</td></tr> <tr> <td>정교한 발치 (부분적으로 매복된 치아)</td><td>가입금액의 50%</td></tr> <tr> <td>완전 매복된 치아의 발치</td><td>가입금액의 100%</td></tr> </tbody> </table> ※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치(단순, 정교, 완전매복치)치료를 받은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구분	지급금액	단순 발치 (맹출치아 및 노출된 치근)	가입금액의 25%	정교한 발치 (부분적으로 매복된 치아)	가입금액의 50%	완전 매복된 치아의 발치	가입금액의 100%
구분	지급금액								
단순 발치 (맹출치아 및 노출된 치근)	가입금액의 25%								
정교한 발치 (부분적으로 매복된 치아)	가입금액의 50%								
완전 매복된 치아의 발치	가입금액의 100%								
자동차사고 치아보철· 크라운치료 지원금	자동차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5급32항, 6급31항, 7급26항, 8급25항, 9급19항, 10급9항, 11급5항, 12급7항, 13급4항, 14급4항에 해당되어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 치아 1개당 가입금액 지급								
영구치아 상실위로금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영구치아를 상실한 경우 치아 1개당 가입금액 지급 ※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아를 상실한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골절 진단비	상해사고로 약관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가입금액 지급								

보장명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치아보철 치료지원금 (상해 및 질병) (영구치)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받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 (잇몸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 정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에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①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지급기준	지급금액		지급 한도	
			최초 계약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 부터 가입후 2년미만	가입후 2년이상		갱신 계약
	임플란트 (Implant)	영구치 발거 1개당	가입금액의 50%	가입금액의 100%	가입금액의 100%	한도 없음
	가철성의치 (틀니, Denture)	보철물당	가입금액의 50%	가입금액의 100%	가입금액의 100%	연간 1회
	고정성 가공의치 (브릿지, Bridge)	영구치 발거 1개당	가입금액의 25%	가입금액의 50%	가입금액의 50%	한도 없음
	② 상해로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지급기준	지급금액		지급 한도	
임플란트 (Implant)	영구치 발거 1개당	가입금액의 100%		한도 없음		
가철성의치 (틀니, Denture)	보철물당	가입금액의 100%		연간1 회		
고정성 가공의치 (브릿지, Bridge)	영구치 발거 1개당	가입금액의 50%		한도 없음		
※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 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보장명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 (상해 및 질병) (영구치)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받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 정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 영구치 발거 1개당 시술방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①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지급금액		갱신계약
				최초계약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 부터 가입후 2년미만	가입후 2년이상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	골이식술 (BBG)	가입금액의 15%	가입금액의 30%	가입금액의 30%
			골유도재생술 (GBR)	가입금액의 25%	가입금액의 50%	가입금액의 50%
			상악동거상술 (SL)	가입금액의 50%	가입금액의 100%	가입금액의 100%
		구분		지급금액		
				골이식술 (BBG)	가입금액의 30%	
골유도재생술 (GBR)	가입금액의 50%					
상악동거상술 (SL)	가입금액의 100%					
※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 해당 영구치에 발거한 부위에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				

보장명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Ⅱ (상해 및 질병) (영구치)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받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 정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 영구치 발거 1개당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①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													
	<table><tr><th rowspan="3">구분</th><th colspan="3">지급금액</th></tr><tr><th colspan="2">최초계약</th><th rowspan="2">갱신계약</th></tr><tr><th>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부터 가입후 2년미만</th><th>가입후 2년이상</th></tr><tr><td>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td><td>가입금액의 50%</td><td>가입금액의 100%</td><td>가입금액의 100%</td></tr></table>	구분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부터 가입후 2년미만	가입후 2년이상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	가입금액의 50%	가입금액의 100%	가입금액의 100%
	구분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부터 가입후 2년미만	가입후 2년이상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	가입금액의 50%	가입금액의 100%	가입금액의 100%											
② 상해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														
<table><tr><th>구분</th><th>지급금액</th></tr><tr><td>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td><td>가입금액의 100%</td></tr></table>	구분	지급금액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	가입금액의 100%										
구분	지급금액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	가입금액의 100%													
※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 해당 영구치에 발거한 부위에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														

보장명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어린이 치아 치료 보장 (발치/ 영구치상 실/보철/ 치조골 이식)	발치 치료비	보장개시일 이후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 정한 발치(단순, 정교, 완전매복치)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 1개당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구분		지급금액																													
		단순 발치 (맹출치아 및 노출된 치근)		가입금액의 0.5%																													
		정교한 발치 (부분적으로 매복된 치아)		가입금액의 1%																													
		완전 매복된 치아의 발치		가입금액의 2%																													
※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임(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치(단순, 정교, 완전매복치)치료를 받은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치아 보철 치료 지원금 (상해및 질병) (영구치)	영구 치아 상실 위로금	보장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영구치아를 상실한 경우 치아 1개당 가입금액의 10% 지급																															
		※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임(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아를 상실한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받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 정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에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①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table><tr><th rowspan="3">구분</th><th rowspan="3">지급기준</th><th colspan="3">지급금액</th><th rowspan="3">지급 한도</th></tr><tr><th colspan="2">최초 계약</th><th rowspan="2">갱신 계약</th></tr><tr><th>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 부터 가입후 2년미만</th><th>가입후 2년이상</th></tr><tr><td>임플란트 (Implant)</td><td>영구치 발거 1개당</td><td>가입금액의 50%</td><td>가입금액의 100%</td><td>가입금액의 100%</td><td>한도 없음</td></tr><tr><td>가철성의치 (틀니, Denture)</td><td>보철물당</td><td>가입금액의 50%</td><td>가입금액의 100%</td><td>가입금액의 100%</td><td>연간 1회</td></tr><tr><td>고정성 가공의치 (브릿지, Bridge)</td><td>영구치 발거 1개당</td><td>가입금액의 25%</td><td>가입금액의 50%</td><td>가입금액의 50%</td><td>한도 없음</td></tr></table>					구분	지급기준	지급금액			지급 한도	최초 계약		갱신 계약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 부터 가입후 2년미만	가입후 2년이상	임플란트 (Implant)	영구치 발거 1개당	가입금액의 50%	가입금액의 100%	가입금액의 100%	한도 없음	가철성의치 (틀니, Denture)	보철물당	가입금액의 50%	가입금액의 100%	가입금액의 100%	연간 1회	고정성 가공의치 (브릿지, Bridge)	영구치 발거 1개당	가입금액의 25%	가입금액의 50%
구분	지급기준	지급금액			지급 한도																												
		최초 계약		갱신 계약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 부터 가입후 2년미만	가입후 2년이상																														
임플란트 (Implant)	영구치 발거 1개당	가입금액의 50%	가입금액의 100%	가입금액의 100%	한도 없음																												
가철성의치 (틀니, Denture)	보철물당	가입금액의 50%	가입금액의 100%	가입금액의 100%	연간 1회																												
고정성 가공의치 (브릿지, Bridge)	영구치 발거 1개당	가입금액의 25%	가입금액의 50%	가입금액의 50%	한도 없음																												

보장명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어린이 치아치료 보장 (발치/영 구치상실 /보철/ 치조골 이식)	치아 보철 치료 지원금 (상해및 잡상) (영구치)	② 상해로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지급기준	지급금액	지급 한도	
		임플란트 (Implant)	영구치 발거 1개당	가입금액의 100%	한도 없음	
		가철성의치 (틀니, Denture)	보철물당	가입금액의 100%	연간 1회	
		고정성가공 의치 (브릿지, Bridge)	영구치 발거 1개당	가입금액의 50%	한도 없음	
	※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 부터 90일이 지 난날의 다음날임(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를 받은 경 우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특정 임플 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 (상해및 잡상) (영구치)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받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 정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 영구치 발거 1개당 시술방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①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지급금액		갱신계약
				최초계약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 부터 가입후 2년미만	가입후 2년이상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		골이식술 (BBG)	가입금액의 15%	가입금액의 30%	가입금액의 30%	
		골유도재생술 (GBR)	가입금액의 25%	가입금액의 50%	가입금액의 50%	
		상악동거상술 (SL)	가입금액의 50%	가입금액의 100%	가입금액의 100%	
② 상해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지급금액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		골이식술 (BBG)	가입금액의 30%			
	골유도재생술 (GBR)	가입금액의 50%				
	상악동거상술 (SL)	가입금액의 100%				
※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 난날의 다음날임(단,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 해당 영구치에 발거한 부위에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						

□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 1)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상품의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의 책임(보장)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 날에 시작합니다. 단,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기 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2)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서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3) 치아영상진단비(X-ray 및 파노라마 촬영) 보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약관에 정한 치아 영상진단(X-ray 및 파노라마 촬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4) 특정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비 보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약관에 정한 특정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5) 발치치료비 보장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약관에 정한 발치(단순, 정교, 완전매복치) 치료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6)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 특정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로 합니다.
- 7) 치아 영상진단(X-ray 및 파노라마 촬영) 치료, 치수치료(신경치료), 보존치료, 발치(단순, 정교, 완전매복치)치료, 보철치료,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 영구치아 상실 및 어린이 치아치료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8) 치아보존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유치·영구치)(크라운 연간3개한) 및 치아보존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유치·영구치)(크라운 무제한) 특별약관은 최초 보험가입 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합니다. 다만,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감액 지급하지 않습니다.
- 9) 치아보철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영구치),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치료비(상해 및 질병)(영구치) 특별약관,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치료비Ⅱ(상해 및 질병)(영구치) 특별약관은 최초 보험가입 후 2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합니다. 다만,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감액 지급하지 않습니다.

- 10) 어린이 치아치료보장(발치/영구치상실/보철/치조골이식) 특별약관의 치아보철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영구치) 세부보장,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술 치료비(상해 및 질병)(영구치) 세부보장은 최초 보험가입 후 2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합니다. 다만,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감액 지급하지 않습니다.
- 11) 기본계약 및 선택계약의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산출기초 및 공시이율

□ 보험료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 보험료, 만기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보험료,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보험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 적용이율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란?

보험회사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대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해 두는데 보험료 납입시점과 보험금 지급시점에는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기간동안 보험회사는 적립된 금액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운용에 따라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러한 할인을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장부분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공시이율이란?

이 보험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합니다.

※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산출방법은 인터넷홈페이지 상품공시실에서 무배당 삼성화재 치아보험 덴탈파트너(1904.4)(자동갱신형)의 사업방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험의 적립부분 순보험료는 공시이율(보장성 공시이율V 적용)에 의해 연동되어 적립되며, 2019년 3월 현재 적용되는 이율은 연단위 복리 2.20%입니다. 단,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5%입니다.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최저보증이율이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 적용위험률

적용위험률이란?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 적용위험률 예시 >

(기준: 기본계약, 40세)

보장위험	적용위험률	
	남자	여자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발생률	0.373730	0.381235

□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비용으로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 보험가격지수

□ 보험가격지수

- 산출식 : “영업보험료 ÷ (참조순보험료 + 상품군별 평균사업비) × 100”

보험가격지수란?

해당상품의 보험료총액(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을 참조순보험료 총액과 평균사업비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보험가격지수"라고 합니다.

* 평균공시이율 및 참조 순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 상품군별로 손해보험상품 전체의 평균사업비율을 반영하여 계산(역산)한 값

●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 무배당 삼성화재 치아보험 덴탈파트너(1904.4)(자동갱신형)은 무배당 상품으로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해지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보험료적립금(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해지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미경과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 해지환급금이 적은 이유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써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품내용은 무배당 삼성화재 치아보험 덴탈파트너(1904.4)(자동갱신형)의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1. 금융서비스의 이용 범위

- 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만으로 이용됩니다.
- 나. 고객은 영업장·인터넷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1) 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휴·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2)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상의 고객 권리

가.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 통보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회사가 본인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조회방법

o 인터넷 : <http://www.samsungfire.com>

나.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 제 36 조에 따라 회사가 전국 은행연합회, 신용조사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 제 37 조에 따라 가입 신청 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사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 신청방법

o 서 면 : 본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 길 14) 또는 각 영업점

o 전 화 : 1588-5114

o 인터넷 : <http://www.samsungfire.com>

- 다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해당 신용정보주체와 약정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객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마케팅 목적의 연락중지는 즉시 가능)

라.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 제 38 조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o 서 면 : 본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 길 14) 또는 각 영업점
 - o 전 화 : 1588-5114
 - o 인터넷 : <http://www.samsungfire.com>

마.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 제 39 조에 따라 본인 정보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NICE 신용정보(주) : ☎ 02-2122-4000 인터넷 www.nice.co.kr
 - 서울신용평가정보(주) : ☎ 02-3445-5000 인터넷 www.sci.co.kr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 02-708-6000 인터넷 www.kcb4u.com

3.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보상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당사 고객정보 관리·보호 고충처리자
: 02-758-4045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 길 14
 - 협회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 02-3702-8500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68
 - 금융감독원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 (국번없이) 133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무배당 삼성화재 치아보험
덴탈파트너(1904.4)(자동갱신형)

목 차

보통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6
제1조 목적	6
제2조 용어의 정의	6
제3조 치아관련 용어의 정의	9
제2관 보험금의 지급	9
제4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9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0
제6조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의 정의	11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1
제8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12
제9조 보험금의 청구	12
제10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13
제11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15
제12조 환급금의 중도인출	16
제13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16
제14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18
제15조 주소변경통지	18
제16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18
제17조 대표자의 지정	19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19
제18조 계약 전 알릴 의무	19
제19조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20
제20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22
제21조 사기에 의한 계약	25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25
제22조 보험계약의 성립	25
제23조 청약의 철회	26

제24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27
제25조 계약의 무효	30
제26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31
제27조 보험나이 등	32
제28조 계약의 소멸	33
제5관 보험료의 납입	33
제29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33
제30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35
제31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35
제32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37
제33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38
제34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39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41
제35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41
제36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41
제37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42
제38조 해지환급금	42
제39조 보험계약대출	43
제40조 배당금의 지급	44
제7관 분쟁조정 등	44
제41조 분쟁의 조정	44
제42조 관할법원	44
제43조 소멸시효	45
제44조 약관의 해석	45
제45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45
제46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46
제47조 개인정보보호	46
제48조 준거법	47
제49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47

특별약관

1. 치아 관련 특별약관	50
---------------------	----

1-1. 치아영상진단비(X-ray 및 파노라마 촬영) 특별약관	50
1-2. 치수치료(신경치료)비(상해 및 질병)(유치·영구치) 특별약관	56
1-3. 치아보존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유치·영구치)(크라운 연간3개한) 특별약관	64
1-4. 치아보존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유치·영구치)(크라운 무제한) 특별약관	74
1-5. 특정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비 특별약관	83
1-6. 발치 치료비 특별약관	90
1-7. 치아보철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영구치) 특별약관	97
1-8.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상해 및 질병)(영구치) 특별약관	109
1-9.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 II (상해 및 질병)(영구치) 특별약관	121
1-10. 자동차사고 치아보철·크라운치료지원금 특별약관	132
1-11. 영구치아 상실위로금 특별약관	137
1-12. 어린이 치아치료보장(발치/영구치상실/보철/치조골이식) 특별약관	142
2. 상해 관련 특별약관	163
2-1. 골절 진단비 특별약관	163

별표

[별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168
[별표-상해관련1]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	169
[별표-상해관련2] 골절 분류표	179

제도성 특별약관

1. 만기 자동갱신 특별약관	182
2. 이론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186
3.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189
4. 단체취급 특별약관	191
5.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196



보 통 약 관



무배당 삼성화재 치아보험

덴탈파트너(1904.4)(자동갱신형) 보통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 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 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관계 관련 용어

1.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2.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3.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4.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5.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② 지급사유 관련 용어

1.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2.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③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1.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2.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이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업무자료/보험업무」 내 「보험상품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④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1.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2.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⑤ 보험료 관련 용어

1.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2. 보장보험료: 손해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3. 적립보험료: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보험료>

보험료는 계약자가 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요금을 말하며, 보험료는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기 위한 적립부분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회사 운영에 필요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과 보험금 지급조사를 위한 손해조사비)로 구성됩니다.

- 보험료 =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

- 보장보험료 = 위험보험료 + 부가보험료

- 적립보험료 = 적립부분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⑥ 갱신 관련 용어

1. 최초계약: 최초로 체결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2. 갱신계약: 최초계약 보험기간이 끝난 후 제도성 특별약관 1. 만기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자동 갱신된 계약을 말합니다.
3. 갱신일: 갱신되기 직전 계약(이하 「갱신전 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제3조 (치아관련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치아관련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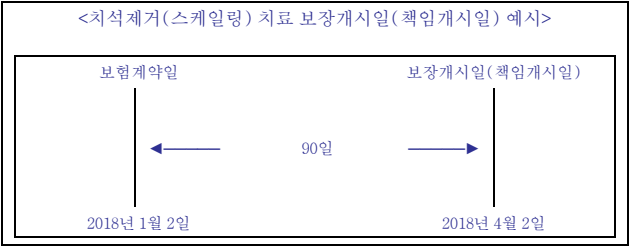
1. 치아치료를 위한 치석제거(스케일링) : 치주질환(잇몸질환)을 발생시키는 원인요소 중 치면에 부착된 치석(치면부착 이물질 포함) 등을 제거하는 과정으로써 핸드 스케일러 혹은 초음파 치석제거기를 사용하는 술식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마제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치면의 표면을 마무리 하는 과정까지 포함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4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2항에서 정한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제6조(「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의 정의)에 정한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진단 확정 받고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치과병원, 치과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이 계약의 보험계약일(이하 「보험계약일」이라 합니다)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일은 이 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 ③ 제1항의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제1항에 정한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치과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종료 후 진단과 관련된 직접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6조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의 정의)

- ① 이 계약에서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서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목적으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이하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급여 인정 기준」이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등의 개정으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급여 인정 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급여 인정 기준을 따릅니다.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치과치료를 진단확정받은 경우
7.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제8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9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치과치료관련 증명서
 - 가. 치과진료기록 사본
 - 나. 해당 치과치료 진단서 및 치과치료 확인서(회사양식)
 - 다. 회사가 상기 서류 이외에 보험금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가로 요청하는 구강 내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
 3. 진료비계산서(「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항목이 포함된 치과 진료비 영수증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단, 단체취급 특별약관을 부가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때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이 아닌 자가 청구하는 경우 법정상속인의 확인서 등)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치과치료 확인서(또는 치과치료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치과병원, 치과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제10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9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9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 ③ 제2항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보험금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 ④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 참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⑦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 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11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① 이 보험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정해진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보장성 공시이율 V(이하 「공시이율」이라 합니다)로 하며, 공시이율은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마지막 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 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제12조 (환급금의 중도인출)

- ①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2년 이후에 계약이 유효한 경우 매보험년도마다 4회에 한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인출시점의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단, 기본계약 해지환급금이 적립부분 해지환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본계약 해지환급금을 한도로 하며, 이 약관에서 정한 보험계약대출이 있을 경우 그 원금과 이자합계액 및 이미 중도인출을 한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80%한도 내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일부터 10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각 인출시점까지의 인출금액 총합계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험년도>

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다음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로 매1년 단위의 연도임.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18년 1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1월 15일부터 2019년도 1월 14일까지 1년을 말함

<중도인출금의 한도 예시>

중도인출 시점에서 계산된 기본계약 해지환급금과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 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 총 중도인출 가능액 = 100만원 × 80% = 80만원

기 신청한 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경우(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30만원
→ 으로 가정) 중도인출 가능액
= 80만원(총 중도인출 가능액) - 30만원 = 50만원

제13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 ①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공시이율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

법서”에 따라 적립한 금액(제12조(환급금의 중도인출)에 따라 중도인출한 경우에는 중도인출한 금액을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만기환급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제11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5%로 합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만기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1]참조)에 따릅니다.
- ④ 제12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항에 따라 환급금을 중도인출한 경우에는 중도인출금 및 중도인출금에 부리되었을 이자만큼 만기환급금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제1항에 정한 지급금이 감소합니다.
- ⑤ 제2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적립보험료 등을 감액할 경우 제1항에 정한 만기환급금은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부리되며 공시이율이 0.25%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이 공시이율보다 큰 경우), 적립금은 공시이율(0.25%)이 아닌 최저보증이율로 부리됩니다.

제14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5조 (주소변경통지)

-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6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 ①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13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1항의 경우는 계약자

로 하고,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기타 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수익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때에는 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제17조 (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8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제19조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직업]

-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할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유의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상해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 변경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관련 예시: A씨(피보험자)는 일반 사무직으로 근무하던 중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몇 년 후 물품배달원으로 직업을 변경하였으나 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고, 물품 배달 업무 중 일반 상해로 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이 약정한 보험금보다 적게 지급되었습니다.

제20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9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최초계약 체결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

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9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⑧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제2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부활(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한 경

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제21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22조 (보험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최초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⑥ 제5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이라 함은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⑦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23조 (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모집종사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24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약관의 중요한 내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설명의무의 중요사항 등)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에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갱신의 조건
- 저축성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통신판매계약>

전화 · 우편 ·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5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계약이 유효합니다.

<용어풀이>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6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적립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계약자가 회사에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는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 ⑥ 회사는 제1항 제4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드리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7조 (보험나이 등)

-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5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18년 4월 13일

⇒ 2018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9년 6개월 11일 = 30세

제28조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보장부분 책임준비금과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9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이 계약의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일은 이 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제30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31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 ① 계약자는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9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더한

금액이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자동대출납입>

보험료를 제때에 납입하기 곤란한 경우에 계약자가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하면 해당 보험 상품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납입할 보험료를 자동적으로 대출하여 이를 보험료 납입에 충당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이율>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에 따라 계약자가 대출을 받을 경우, 회사가 정하는 대출이율이며,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시점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제32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 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

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3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2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2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단,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

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적용합니다.

-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34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과 담보권실행>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추심명령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의 절차 없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받아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
- 전부명령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는 집행법원의 결정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35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25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6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미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보험금 지급>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변조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회사는 실제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1항제1호에서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7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8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 때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는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공시이율을 적용하고, 제12조(환급금의 중도인출)에 따라 중도인출한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에서 중도인출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제11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단,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5%로 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 1]참조)에 따릅니다.
- ③ 제12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항에 따라 환급금을 중도인출한 경우에는 중도인출금 및 중도인출금에 부리되었을 이자만큼 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제1항에 정한 지급금이 감소합니다.
- ④ 제2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적립보험료 등을 감액할 경우 제1항에 정한 해지환급금은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금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⑤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39조 (보험계약대출)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40조 (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관 분쟁조정 등

제41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2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3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만기환급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 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책임준비금 반환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8년 4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21년 4월 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4조 (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5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제46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에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7조 (개인정보보호)

-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8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9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본 회사에 있는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보험금 또는 환급금 등을 합하여 1명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특별약관



※ 특별약관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선택한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특별약관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1. 치아 관련 특별약관

1-1. 치아영상진단비(X-ray 및 파노라마 촬영) 특별약관

제1조 (치아관련 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치아관련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X-ray 촬영, 파노라마 촬영 : 치과치료를 목적으로 환자의 치열 상태, 상하악골, 상악동, 하치조 신경 경로 등 치과검진을 하기 위한 촬영술식입니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2항에서 정한 치아영상진단(X-ray 및 파노라마 촬영)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치과병원, 치과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치과치료를 위해 X-ray 또는 파노라마 촬영이 필요하다고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치과의사」라 합니다)가 판단하는 경우로서 제4조(치아영상진단(X-ray 및 파노라마 촬영)의 정의)에 정한 「치아영상진단(X-ray 및 파노라마 촬영)」을 받은 경우에는 촬영 1회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치

아영상진단비(X-ray 및 파노라마 촬영)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치아영상진단(X-ray 및 파노라마 촬영)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이하 「보험계약일」이라 합니다)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아영상진단(X-ray 및 파노라마 촬영)」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일을 「치아영상진단(X-ray 및 파노라마 촬영)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로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일은 이 특별약관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치아영상진단(X-ray 및 파노라마 촬영)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예시>



※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아영상진단(X-ray 및 파노라마 촬영)을 받은 경우에는 치아영상진단(X-ray 및 파노라마 촬영)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상해로 2회 이상의 X-ray 촬영 또는 2회 이상의 파노라마 촬영을 한 때에는 하나의 X-ray 촬영 또는 하나의 파노라마 촬영으로 보아 1회에 한하여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상해로 2개 이상의 치아에 X-ray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을 한 때에는 하나의 X-ray 촬영 또는 하나의 파노라마 촬영으로 보아 1회에 한하여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X-ray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을 한 때에는 새로운 질병 또는 상해로 보아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치아영상진단(X-ray 및 파노라마 촬영)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치아영상진단(X-ray 및 파노라마 촬영)」이라 함은 치과치료를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의 치아영상진단(이하 「급여인정 치아영상진단」이라 합니다)으로 아래의 진료행위를 말합니다.

구분		진료행위코드
X-ray 촬영	- 치근단 촬영(Periapical View)	G9101 ~ G9105
	- 교익 촬영(Bitewing View)	G9501 ~ G9505
	- 교합 촬영(Occlusal View)	G9601
파노라마 촬영(Panoramic View)		G9701, G9761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등의 개정으로 「치아영상진단(X-ray 및 파노라마 촬영)」의 정의에 정한 치아영상진단 외에 「급여인정 치아영상진단」에

해당하는 치아영상진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치료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치과치료를 진단확정받은 경우
7.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6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치과치료관련 증명서
 - 가. 치과진료기록 사본
 - 나. 해당 치과치료 진단서 및 치과치료 확인서(회사양식)
 - 다. 진료행위코드가 기재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명세서
 - 라. 회사가 상기 서류 이외에 보험금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가로 요청하는 구강 내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
3. 진료비계산서(「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항목이 포함된 치과 진료비 영수증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단, 단체취급 특별약관을 부가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때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이 아닌 자가 청구하는 경우 법정상속인의 확인서 등)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치과치료 확인서 (또는 치과치료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치과병원, 치과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제7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무배당 삼성화재 치아보험 덴탈파트너(1904.4)(자동갱신형)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2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3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2. 치수치료(신경치료)비(상해 및 질병)(유치·영구치) 특별약관

제1조 (치아관련 용어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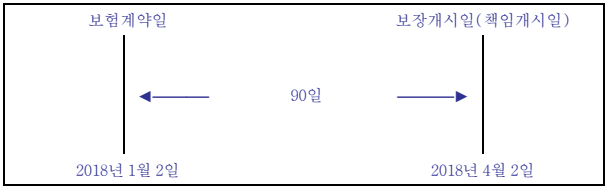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치아관련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치 : 타고난 이를 인공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자연적으로 난 치아를 말합니다. 단, 자연적으로 난 치아 중 치아수복물 및 치아보철물을 제외한 부분에 한합니다.
2. 영구치 : 유치(젓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아를 말합니다. 단,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 치아)는 제외합니다.
3. 유치 : 젓먹이 때 나서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치아를 말합니다.
4. 치수치료(신경치료) : 치아내부에 있는 치수(혈관이 밀집한 연조직)를 제거하여 통증이나 기타 증상을 없애고 치아가 제자리에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존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2항에서 정한 「치수치료(신경치료)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진단받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치과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치과병원, 치과의원,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아 1개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치수치료(신경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치수치료(신경치료)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이하 「보험계약일」이라 합니다)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일을 「치수치료(신경치료)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로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일은 이 특별약관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치수치료(신경치료)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예시>



※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수치료(신경치료)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상해로 1개의 치아에 2회 이상의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치료로 보아 치아 1개당 1회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치수치료(신경치료)를 개시한 경우에는 새로운 질병으로 보아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④ 이미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유치 또는 영구치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새로이 치수치료(신경치료)를 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치수치료(신경치료)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치수치료(신경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치과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종료 후 진단과 관련된 직접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치수치료(신경치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 (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치아우식증(충치)」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2(치아우식증(충치)), K04(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치아의 석회 성분이 녹거나 파괴되었을 때 또는 치수염 등의 원인으로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이 손상되어 치아를 잃게 되는 질환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충치라고 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치주질환(잇몸질환)」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5(치은염 및 치주질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치은(잇몸)염과 치주염으로 구분되며, 염증 반응이 치은조직에만 국한되었을 경우에는 치은(잇몸)염이라고 하고, 치은(잇몸)염을 방치해 치주인대와 치조골이 파괴되었을 때를 치주염이라 말하며, 일반적으로 잇몸질환이라 합니다.
- ③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치과병원, 치과의원, 국외의 의료관

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기 분류번호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단,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을 우선 적용합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질병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치료
7. 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 치아우식증(충치) 이나 치주질환(잇몸질환) 이외의 원인 또는 상해 이외의 원인으로 치과치료를 받은 경우
8. 이미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질병 또는 상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받은 경우
9.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를 한 경우
10.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6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치과치료관련 증명서

가. 치과진료기록 사본

나. 아래 내용이 포함된 치과치료 진단서 및 치과

치료 확인서(회사양식)

(ㄱ) 치료한 치아의 위치 또는 치아번호

(ㄴ) 해당 치아의 내원 당시의 치아상태

(ㄷ) 직접적인 치아의 치료원인

(ㄹ) 치료받은 치과치료의 종류

(ㄴ) 치과치료 진단확정일, 치료시작일 및 치료종료(예정)일

다. 회사가 상기 서류 이외에 보험금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가로 요청하는 구강 내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단, 단체취급 특별약관을 부가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때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이 아닌 자가 청구하는 경우 법정상속인의 확인서 등)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치과치료 확인서(또는 치과치료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치과병원, 치과의원, 국외의 의료관련법

에서 정한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제7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유치 또는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사유 발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무배당 삼성화재 치아보험 덴탈파트너(1904.4)(자동갱신형)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2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3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3. 치아보존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유치·영구치)(크라운 연간3개한) 특별약관

제1조 (치아관련 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치아관련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치: 타고난 이를 인공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자연적으로 난 치아를 말합니다. 단, 자연적으로 난 치아 중 치아수복물 및 치아보철물을 제외한 부분에 한합니다.
2. 영구치: 유치(젓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 치아를 말합니다. 단,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 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 치아)는 제외합니다.
3. 유치: 젓먹이 때 나서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치아를 말합니다.
4. 아말감(Amalgam): 치아를 보존하는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구리, 주석, 은 등의 합금과 수은의 혼합체를 말합니다.
5. 글래스아이노머(Glass ionomer: G.I): 치아를 보존하는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주로 산부식처리가 필요 없는 화학 접착으로 처리된 치과 재료를 말합니다.
6. 복합레진(Composite Resin): 구강 충전 혹은 수복재료로 사용되는 치과용 플라스틱 레진(수지)을 말합니다.

7. 인레이(Inlay) 또는 온레이(Onlay): 제거된 치아부위의 본을 떠서 치과용 합금을 이용하여 장착하는 방식으로 치아의 일부를 회복하는 치료방법을 말합니다.
8. 크라운(Crown): 치관장착 치료를 말하며 치아에 손상이 생겨 삭제량이 많은 경우 또는 신경치료로 인해 치아의 강도가 약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치아의 전체를 금속 등의 재료로 씌우는 치료방법을 말합니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중에 제2항에서 정한 「보존치료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진단받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치과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치과병원, 치과의원,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해당 치아(유치 또는 영구치)에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아 1개당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치아보존 치료지원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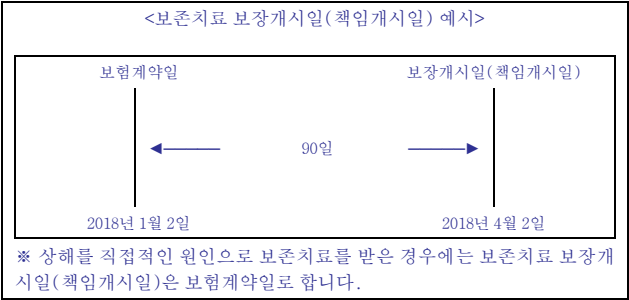
구분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부터 가입후 1년미만	가입후 1년이상	
아말감 또는 글래스 아이노머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5%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
복합레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5%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인레이 또는 온레이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30%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60%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60%
크라운 (단, 유치 · 영구치 각각 연간 3개 한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2. 상해로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지급금액
아말감 또는 글래스 아이노머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
복합레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인레이 또는 온레이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60%
크라운 (단, 유치 · 영구치 각각 연간 3개 한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제1항의 「보존치료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이하 「보험계약일」이라 합니다)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일을 「보존치료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로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일은 이 특별약관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 ③ 제1항에서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로 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상해로 1개의 치아에 2회 이상의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치료로 보아 1회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보존치료를 개시한 경우에는 새로운 질병으로 보아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이미 보존치료를 받은 유치 또는 영구치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새로이 보존치료를 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⑥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질병 또는 상해로 하나의 치아에 대해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당 해당

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 가지의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상악 어금니(영구치) 1개에 치아우식증(충치)이 발생하여 복합레진 보존치료를 진단받고 복합레진 보존치료가 종료되기 이전에 치과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동일한 치아에 크라운 치료를 진단받은 경우, 해당 보존치료 종료시 크라운 치료 보험금만 지급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존치료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보존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치과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종료 후 진단과 관련된 직접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치료는 보험기간이 종료된 날의 전일이 속한 보험년도의 연간 보장한도 내에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 (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치아우식증(충치)」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2

(치아우식증(충치)), K04(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치아의 석회 성분이 녹거나 파괴되었을 때 또는 치수염 등의 원인으로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이 손상되어 치아를 잃게 되는 질환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충치라고 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치주질환(잇몸질환)」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5(치은염 및 치주질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치은(잇몸)염과 치주염으로 구분되며, 염증 반응이 치은 조직에만 국한되었을 경우에는 치은(잇몸)염이라 하고, 치은(잇몸)염을 방치해 치주인대와 치조골이 파괴되었을 때를 치주염이라 말하며, 일반적으로 잇몸질환이라 합니다.
- ③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치과병원, 치과의원,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기 분류번호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단,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을 우선 적용합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질병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 (보존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보존치료」라 함은 치과의사에 의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치과병원, 치과의원,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유치 또는 영구치에 손상이 생기는 경우에 손상된 부위를 원상 회복시켜 형태학적, 기능적 복구를 도모하는 치료로서, 아말감(Amalgam), 글래스아이노머(Glass ionomer), 복합레진(Composite Resin), 금(Gold) 또는 세라믹(Ceramic) 등의 치과재료를 이용하여 해당 치아의 손상된 부분을 인레이, 온레이 또는 크라운 등의 보존치료 방법으로 보강하는 치료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상기 치과재료와 유사하거나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치료재료 및 방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치료방법도 보상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치료
7. 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 치아우식증(충치)이나 치주질환(잇몸질환) 이외의 원인 또는 상해 이외의 원인으로 치과치료를 받은 경우
8. 치아수복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9.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를 한 경우
10.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7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치과치료관련 증명서

가. 치과진료기록 사본

나. 아래 내용이 포함된 치과치료 진단서 및 치과

치료 확인서(회사양식)

(ㄱ) 치료한 치아의 위치 또는 치아번호

(ㄴ) 해당 치아의 내원 당시의 치아상태

(ㄷ) 직접적인 치아의 치료원인

(ㄹ) 치료받은 치과치료의 종류(충전치료재료 포함)

(ㄴ) 치과치료 진단확정일, 치료시작일 및 치료종료(예정)일

다. 회사가 상기 서류 이외에 보험금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가로 요청하는 구강 내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 자료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단, 단체취급 특별약관을 부가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때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이 아닌 자가 청구하는 경우 법정상속인의 확인서 등)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치과치료 확인서(또는 치과치료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호(의료기관)에서 규정

한 국내의 치과병원, 치과의원,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제8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유치 또는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사유 발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9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무배당 삼성화재 치아보험 덴탈파트너(1904.4)(자동갱신형)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2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3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4. 치아보존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유치·영구치)(크라운 무제한) 특별약관

제1조 (치아관련 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치아관련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치: 타고난 이를 인공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자연적으로 난 치아를 말합니다. 단, 자연적으로 난 치아 중 치아수복물 및 치아보철물을 제외한 부분에 한합니다.
2. 영구치: 유치(젓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 치아를 말합니다. 단,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 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 치아)는 제외합니다.
3. 유치: 젓먹이 때 나서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치아를 말합니다.
4. 아말감(Amalgam): 치아를 보존하는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구리, 주석, 은 등의 합금과 수은의 혼합체를 말합니다.
5. 글래스아이노머(Glass ionomer: G.I): 치아를 보존하는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주로 산부식처리가 필요 없는 화학 접착으로 처리된 치과 재료를 말합니다.
6. 복합레진(Composite Resin): 구강 충전 혹은 수복재료로 사용되는 치과용 플라스틱 레진(수지)을 말합니다.

7. 인레이(Inlay) 또는 온레이(Onlay): 제거된 치아부위의 본을 떠서 치과용 합금을 이용하여 장착하는 방식으로 치아의 일부를 회복하는 치료방법을 말합니다.
8. 크라운(Crown): 치관장착 치료를 말하며 치아에 손상이 생겨 삭제량이 많은 경우 또는 신경치료로 인해 치아의 강도가 약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치아의 전체를 금속 등의 재료로 씌우는 치료방법을 말합니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중에 제2항에서 정한 「보존치료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진단받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치과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치과병원, 치과의원,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해당 치아(유치 또는 영구치)에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아 1개당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치아보존 치료지원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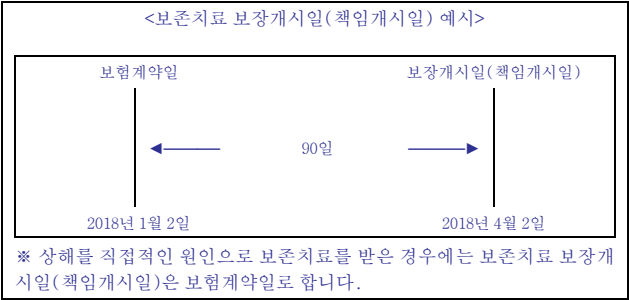
구분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부터 가입후 1년미만	가입후 1년이상	
아말감 또는 글래스 아이노머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5%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
복합레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5%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인레이 또는 온레이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30%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60%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60%
크라운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2. 상해로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지급금액
아말감 또는 글래스 아이노머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
복합레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인레이 또는 온레이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60%
크라운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제1항의 「보존치료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이하 「보험계약일」이라 합니다)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일을 「보존치료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로 합니다. 이 경

우 보험계약일은 이 특별약관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상해로 1개의 치아에 2회 이상의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치료로 보아 1회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보존치료를 개시한 경우에는 새로운 질병으로 보아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④ 이미 보존치료를 받은 유치 또는 영구치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새로이 보존치료를 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질병 또는 상해로 하나의 치아에 대해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치아당 해당 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 가지의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상악 어금니(영구치) 1개에 치아우식증(충치)이 발생하여 복합레진 보존치료를 진단받고 복합레진 보존치료가 종료되기 이전에 치과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동일한 치아에 크라운 치료를 진단받은 경우, 해당 보존치료 종료시 크라운 치료 보험금만 지급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존치료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보존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치과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종료 후 진단과 관련된 직접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보존치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 (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치아우식증(충치)」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2(치아우식증(충치)), K04(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치아의 석회 성분이 녹거나 파괴되었을 때 또는 치수염 등의 원인으로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이 손상되어 치아를 잃게 되는 질환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충치라고 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치주질환(잇몸질환)」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5(치은염 및 치주질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치은(잇몸)염과 치주염으로 구분되며, 염증 반응이 치은조직에만 국한되었을 경우에는 치은(잇몸)염이라고 하고, 치은(잇몸)염을 방치해 치주인대와 치조골이 파괴되었을 때를 치주염이라 말하며, 일반적으로 잇몸질환이라 합니다.
- ③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치과병원, 치과의원,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기 분류번호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단,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을 우선 적용합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질병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 (보존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보존치료」라 함은 치과의사에 의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치과병

원, 치과의원,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유치 또는 영구치에 손상이 생기는 경우에 손상된 부위를 원상 회복시켜 형태학적, 기능적 복구를 도모하는 치료로서, 아말감(Amalgam), 글래스아이노머(Glass ionomer), 복합레진(Composite Resin), 금(Gold) 또는 세라믹(Ceramic) 등의 치과재료를 이용하여 해당 치아의 손상된 부분을 인레이, 온레이 또는 크라운 등의 보존치료 방법으로 보강하는 치료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상기 치과재료와 유사하거나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치료재료 및 방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치료방법도 보상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치료

7. 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
치아우식증(충치)이나 치주질환(잇몸질환) 이외
의 원인 또는 상해 이외의 원인으로 치과치료를
받은 경우

8. 치아수복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9.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를 한 경우

10.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
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
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
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
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
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
하고 있는 동안

제7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치과치료관련 증명서

가. 치과진료기록 사본

나. 아래 내용이 포함된 치과치료 진단서 및 치과

치료 확인서(회사양식)

(ㄱ) 치료한 치아의 위치 또는 치아번호

(ㄴ) 해당 치아의 내원 당시의 치아상태

(ㄷ) 직접적인 치아의 치료원인

(ㄹ) 치료받은 치과치료의 종류(충전치료재료 포함)

(ㄹ) 치과치료 진단확정일, 치료시작일 및 치료종료(예정)일

다. 회사가 상기 서류 이외에 보험금 심사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추가로 요청하는 구강 내 사

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 자료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단, 단체취급 특별약관을 부가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때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이 아닌 자가 청구하는 경우 법정상속인의 확인서 등)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치과치료 확인서(또는 치과치료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호(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치과병원, 치과의원,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제8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유치 또는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해당사유 발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9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무배당 삼성화재 치아보험 덴탈파트너(1904.4)(자동갱신형)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2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3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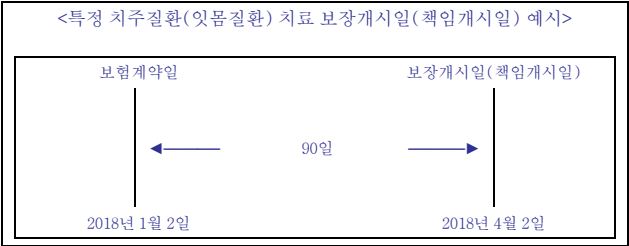
1-5. 특정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비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2항에서 정한 특정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확정 받고,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치과병원, 치과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제3조(「특정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의 정의)에 정한 특정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내용별 지급기준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특정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특정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이하 「보험계약일」이라 합니다)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일은 이 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특정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정한 특정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치과의사」라 합니다)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종료 후 진단과 관련된 직접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특정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특정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서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준(이하 「치주질환 치료 급여인정 기준」이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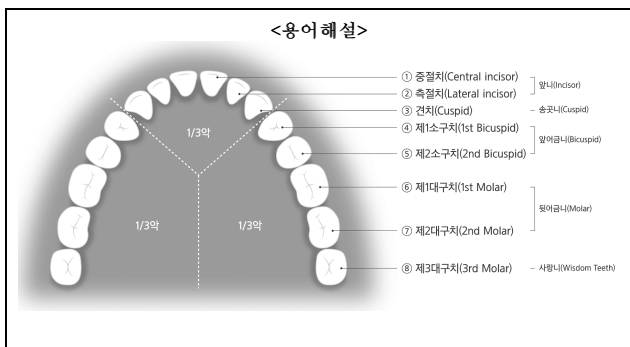
지급기준	치료내용	진료행위코드
1/3악당 지급	치주소파술	U1010
	치은신부착술	U1020
	치은성형술	U1030
	치은절제술	U1040
	치은박리소파술	
	가. 간단	U1051
	나. 복잡 [치조골의 성형, 삭제술 포함]	U1052
	치근면처치술	U1060
치료 1회당 지급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가.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이식의 경우	U1071
	나. 자가골이식의 경우[채취 포함]	U1072
	조직유도재생술	
	가. 골이식을 동반하지 아니한 경우	U1081
	나. 골이식을 동반한 경우	
	(1)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이식의 경우	U1082
	(2) 자가골이식의 경우[채취 포함]	U1083
	조직유도재생막 제거술	U1090
	치은측방변위관막술, 치관변위관막술	U1100
치료치아 1개당 지급	치은이식술	U1110
	치관분리술	UX102
	치근절제술	
	가. 선택적치근절제술	U1131
	나. 치아반측절제술	U1132
	치관확장술	
	가. 치은절제술	UY101
	나. 근단변위관막술	UY102
	다. 근단변위관막술 및 치조골삭제술	UY103

<용어해설>

「치주질환(잇몸질환)」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5(치은염 및 치주질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치은(잇몸)염과 치주염으로 구분되며, 염증 반응이 치은 조직에만 국한되었을 경우에는 치은(잇몸)염이라 하고, 치은(잇몸)염을 방치해 치주인대와 치조골이 파괴되었을 때를 치주염이라 말하며, 일반적으로 잇몸질환이라 합니다.

- ② 동일한 잇몸부위에 주된 치료와 이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치료로 두 가지 이상의 「특정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치료에 대해서만 보장합니다.

- ③ 제1항에서 「1/3악」이라 함은 치아전체[상악(윗니), 하악(아랫니)]를 각 좌측구치부, 우측구치부, 전치부로 3구역으로 나눈 단위를 말하며, 1인당 6개의 1/3악을 가집니다. 전치부란 송곳니와 반대 송곳니부분에 해당하는 앞니(송곳니포함)에 해당하며, 구치부는 전치부 이외의 어금니 치아부분에 해당합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등의 개정으로 「치주질환 치료 급여인정 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치주질환 치료 급여인정 기준」을 따릅니다.
- ⑤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특정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에서 정한 치주질환(잇몸질환) 외에 「치주질환 치료 급여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치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치료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⑥ 제1항의 특정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치과병원, 치과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상의 치료

제5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치과치료관련 증명서
가. 치과진료기록 사본

나. 해당 치과치료 진단서 및 치과치료확인서(회사양식)

다. 진료행위코드가 기재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라. 회사가 상기 서류 이외에 보험금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가로 요청하는 구강 내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

3. 진료비계산서(「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항목이 포함된 치과 진료비 영수증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단, 단체취급 특별약관을 부가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때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이 아닌 자가 청구하는 경우 법정상속인의 확인서 등)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치과치료 확인서(또는 치과치료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치과병원, 치과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제6조 (특별약관의 소명)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

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무배당 삼성화재 치아보험 덴탈파트너(1904.4)(자동갱신형)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2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3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6. 발치 치료비 특별약관

제1조 (치아관련 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치아관련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치(拔齒) : 치아를 제거하는 외과적 처치로서, 아래에서 정한 단순 발치, 정교한 발치 및 완전 매복된 치아의 발치를 말합니다.

구분	용어의 설명
단순 발치 (맹출치아 및 노출된 치근)	정상 맹출된 치아를 제거하는 치료술식으로 발치겸자 등 기구를 활용하지만 잇몸 절개, 치아 분할 또는 골삭제 등을 하지 않고 정상 발치하는 경우를 말함
정교한 발치 (부분적으로 매복된 치아)	발치할 치아가 치조골에 부분적으로 매복되어 있는 경우 또는 파절된 치아를 제거하기 위한 시술이며 단순 발치가 불가능한 경우임
완전 매복된 치아의 발치	치관의 2/3이상이 치조골 또는 악골내에 매복된 경우이며 골삭제와 치아분할술이 필요한 치료술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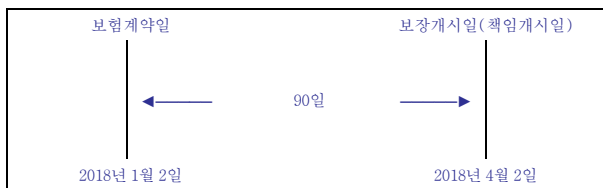
제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2항에서 정한 발치(단순, 정교, 완전매복치) 치료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치과병원, 치과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제4조(「발치(단순, 정교, 완전매복치) 치료」의 정의)에 정한 발치(단순, 정교, 완전매복치)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아 1개당 아래에 정한 금액을 발치(단순, 정교, 완전매복치) 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단순 발치 (맹출치아 및 노출된 치근)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5%
정교한 발치 (부분적으로 매복된 치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완전 매복된 치아의 발치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제1항의 「발치(단순, 정교, 완전매복치) 치료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이하 「보험계약일」이라 합니다)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치(단순, 정교, 완전매복치)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일을 「발치(단순, 정교, 완전매복치) 치료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로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일은 이 특별약관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발치(단순, 정교, 완전매복치) 치료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예시>



※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치(단순, 정교, 완전매복치)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발치(단순, 정교, 완전매복치) 치료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발치(단순, 정교, 완전매복치) 치료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제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정한 발치(단순, 정교, 완전매복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치과의사」라 합니다)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종료 후 진단과 관련된 직접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발치(단순, 정교, 완전매복치) 치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 (「발치(단순, 정교, 완전매복치) 치료」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발치(단순, 정교, 완전매복치) 치료」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서 발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준(이하 「발치 치료 급여인정 기준」이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중 치과병원, 치과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구분		진료행위코드
단순 발치 (맹출치아 및 노출된 치근)	유치(Deciduous Tooth)	U4411
	전치(Anterior Tooth)	U4412
	구치(Posterior Tooth)	U4413
정교한 발치 (부분적으로 매복된 치아)	난발치(Complicated Extraction)	U4414
	단순매복치(Simple)	U4415
	복잡매복치[치아분할술을 실시한 경우](Complex)	U4416
완전 매복된 치아의 발치	완전매복치[치관이 2/3 이상 치조골 내에 매복된 치아의 골절제와 치아 분할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 (Complete)	U4417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등의 개정으로 「발치(단순, 정교, 완전매복치) 치료」의 정의에 정한 발치 치료 외에 「급여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발치 치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치료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치열교정, 양악수술 등 미용상의 치료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6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치과치료관련 증명서
 - 가. 치과진료기록 사본
 - 나. 해당 치과치료 진단서 및 치과치료확인서(회사양식)
 - 다. 진료행위코드가 기재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명세서
 - 라. 회사가 상기 서류 이외에 보험금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가로 요청하는 구강 내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
3. 진료비계산서(「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항목이 포함된 치과 진료비 영수증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단, 단체취급 특별약관을 부가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때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이 아닌 자가 청구하는 경우 법정상속인의 확인서 등)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치과치료 확인서(또는 치과치료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치과병원, 치과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제7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유치 또는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사유 발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무배당 삼성화재 치아보험 덴탈파트너(1904.4)(자동갱신형)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3조(보험

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2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3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7. 치아보철 치료지원금(상해 및 질병)(영구치) 특별약관

제1조 (치아관련 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치아관련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치 : 타고난 이를 인공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자연적으로 난 치아를 말합니다. 단, 자연적으로 난 치아 중 치아수복물 및 치아보철물을 제외한 부분에 한합니다.
2. 영구치 : 유치(젓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아를 말합니다. 단,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 치아)는 제외합니다.
3. 유치 : 젓먹이 때 나서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치아를 말합니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2항에서 정한 보철치료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진단받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 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치과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치과병원, 치과의원,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제5조(「영구치 발거」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정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한 해당 영구치보철치료비를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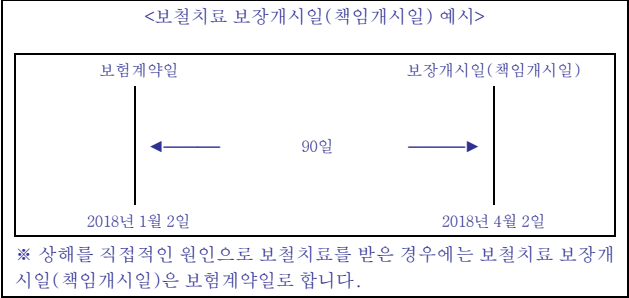
구분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 부터 가입후 2년미만	가입후 2년이상	
임플란트 (Implant)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단, 영구치 받거 1개당 지급)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단, 영구치 받거 1개당 지급)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단, 영구치 받거 1개당 지급)
가철성의치 (틀니, Denture)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단, 보철물당 지급. 연간 1회 한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단, 보철물당 지급. 연간 1회 한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단, 보철물당 지급. 연간 1회 한도)
고정성 가공의치 (브릿지, Bridge)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5% (단, 영구치 받거 1개당 지급)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단, 영구치 받거 1개당 지급)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단, 영구치 받거 1개당 지급)

2. 상해로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지급금액
임플란트 (Implant)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단, 영구치 받거 1개당 지급)
가철성의치 (틀니, Denture)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단, 보철물당 지급. 연간 1회 한도)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Bridge)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단, 영구치 받거 1개당 지급)

- ② 제1항의 「보철치료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이하 「보험계약일」이라 합니다)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일을 「보철치료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로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일은 이 특별약관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 ③ 제1항의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한도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로 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상해로 1개의 치아에 2회 이상의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치료로 보아 1회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상해로 동일한 영구치에 복합형태의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보철치료 중 가장 높은 한 가지 치료항목의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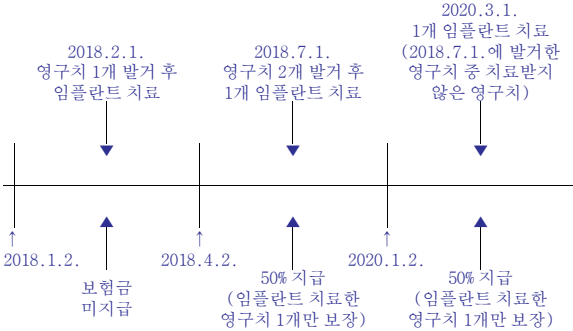
<예시>

☐ 피보험자가 상악에 총의치(전체틀니)와 임플란트를 복합적으로 치료 받는 경우(Implant Overdenture), 해당 치료 종료시 총의치(전체틀니)와 임플란트 보험금 중 한 가지 보험금만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 예시(임플란트 치료)>

계약일 : 2018년 1월 2일

1.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한 경우



- ☐ 영구치를 발거한 일자(2018.2.1.)를 기준으로 2018.2.1.에 발거한 영구치는 면책기간(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동안 발거한 것으로 이후에 치료를 받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영구치를 발거한 일자(2018.7.1.)를 기준으로 2018.7.1.에 발거한 영구치는 감액기간(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2년 미만) 동안 발거한 것으로 이후에 치료를 받더라도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 ☐ 2020.1.2. 이후 발거한 영구치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로 인한 보철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보철치료 지급금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철치료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영구치의 보철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치과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종료 후 진단과 관련된 직접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치료는 보험기간이 종료된 날의 전일이 속한 보험년도의 연간 보장한도 내에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 (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치아우식증(충치)」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2(치아우식증(충치)), K04(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치아의 석회 성분이 녹거나 파괴되었을 때 또는 치수염 등의 원인으로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이 손상되어 치아를 잃게 되는 질환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충치라고 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치주질환(잇몸질환)」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5(치은염 및 치주질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치은(잇몸)염과 치주염으로 구분되며, 염증 반응이 치은조직에만 국한되었을 경우에는 치은(잇몸)염이라고 하고, 치은(잇몸)염을 방치해 치주인대와 치조골이 파괴되었을 때를 치주염이라 말하며, 일반적으로 잇몸질환이라 합니다.
- ③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치과병원, 치과의원, 국외의 의료관

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기 분류번호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단,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을 우선 적용합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질병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 (「영구치 발거」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영구치 발거」라 함은 치과의사가 영구치를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영구치를 뽑거나 제거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다만, 아래의 원인으로 발거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1. 보철준비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 등이 영구치 발거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 보철 치료를 위한 준비로서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 2. 교정 및 위치이상 : 교정치료를 위하여 발치하였거나 위치이상으로 심미적인 개선을 위해 발거한 경우
 - 3.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치아)를 발거하는 경우

4. 맹출장애 : 부분매복되거나, 완전매복되어 발치하는 경우

- ② 「영구치 발거」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치과병원, 치과의원,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6조 (「보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보철치료」라 함은 치과의사에 의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치과병원, 치과의원,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해당 영구치의 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 Denture),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Bridge) 및 임플란트(Implant)의 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용어 해설>

1. 「가철성의치(틀니, Denture)」란, 일반적으로 틀니를 말하며, 영구치와 그와 연관된 조직의 결손 되었을 때, 인공적으로 대체하는 보철물을 장착하는 시술로서 국소의치와 총의치를 포함합니다. 국소의치(부분틀니, Partial Denture)는 전체 치아가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치아와 그 관련조직의 결손을 수복해주는 보철물을 말하며, 금관, 지대치 혹은 다른 고정성 가공의치(브릿지, Bridge) 및 점막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총의치(Complete Denture)는 영구치가 하나도 없는 환자에게 인공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하는 의치를 말하며, 영구치 또는 인공치의 치열 전체, 보통 상실(喪失)한 영구치와 주위 조직을 대신하는 인공 보철물입니다.
2.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Bridge)」란,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다리처럼 연결하여 보철물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치아가 결손이 되어 있을 때 결손이 된 부분에 대해 인접한 영구치를 지대치로 하고, 가공치를 지대치와 연결하여 구강 내에 영구접착 되는 보철물을 말합니다.
3. 「임플란트(Implant)」란, 점막 또는 골막층 하방, 그리고 골조직 내부 등의 구강 조직에 이물 성형재료를 매식한 후 고정성 또는 가철성 보철물을 삽입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7.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치료
8.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9. 치열교정 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10.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11.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다음을 원인으로 발거하는 경우

대상질병	분류코드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K00
매몰치 및 매복치	K01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K03
잇몸 및 무치성 치조용기의 기타 장애	K06
치아열굴이상(부정교합포함)	K07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K08

주)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분류표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분류표에 따릅니다.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8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치과치료관련 증명서
 - 가. 치과진료기록 사본
 - 나. 아래 내용이 포함된 치과치료 진단서 및 치과치료 확인서(회사양식)
 - (㉠) 발거한 영구치의 위치 또는 치아번호
 - (㉡) 해당 치아의 내원 당시의 치아상태
 - (㉢) 직접적인 치아 발거원인
 - (㉣) 치료받은 치과치료의 종류
 - (㉤) 치과치료 진단확정일 및 영구치 발거일자, 치료종료(예정)일
 - 다. 영구치 발거 전후의 X-ray 사진

라. 회사가 상기 서류 이외에 보험금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가로 요청하는 구강 내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 자료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단, 단체취급 특별약관을 부가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때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이 아닌 자가 청구하는 경우 법정상속인의 확인서 등)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치과치료 확인서(또는 치과치료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치과병원, 치과의원,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제9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사유 발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10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무배당 삼성화재 치아보험 덴탈파트너(1904.4)(자동갱신형)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11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2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3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8.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상해 및 질병)(영구치) 특별약관

제1조 (치아관련 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치아관련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치 : 타고난 이를 인공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자연적으로 난 치아를 말합니다. 단, 자연적으로 난 치아 중 치아수복물 및 치아보철물을 제외한 부분에 한합니다.
2. 영구치 : 유치(젓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 치아를 말합니다. 단,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 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 치아)는 제외합니다.

3. 유치 : 젓먹이 때 나서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치아를 말합니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2항에서 정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진단받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치과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치과병원, 치과의원,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제5조(「영구치 발거」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정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영구치 발거 1개당 시술방법에 따라 아래에 정한 금액을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 부터 가입후 2년미만	가입후 2년이상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	골이식술 (BBG)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5%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30%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30%
	골유도재생술 (GBR)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5%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상악동거상술 (SL)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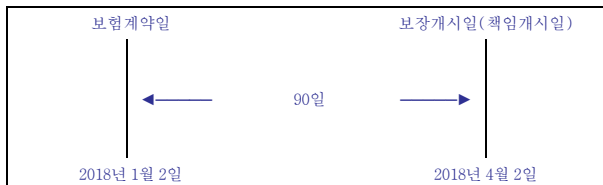
2. 상해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지급금액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	골이식술 (BBG)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30%
	골유도재생술 (GBR)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상악동거상술 (SL)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제1항의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이하 「보험계약일」이라 합니다)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일을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 보장개시일(책임개시

일)」로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일은 이 특별약관
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예시>



※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 ③ 제1항에서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상해로 영구치 발거 1개에 대해 복합형태의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 중 가장 높은 한 가지 치료항목의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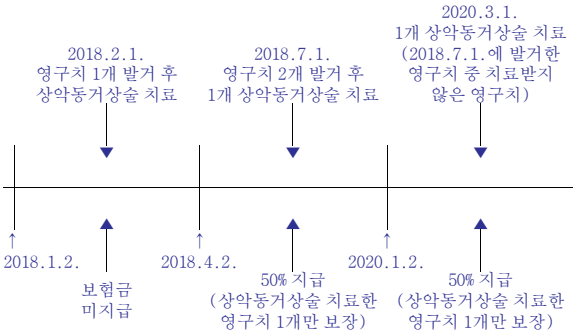
<예시>

- 피보험자가 영구치 1개 받기 후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골이식술(BBG)과 상악동거상술(SL)을 복합적으로 치료받는 경우, 해당 치료 종료시 상악동거상술(SL) 보험금만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 예시(상악동거상술 치료)>

계약일 : 2018년 1월 2일

1.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한 경우



- ☐ 영구치를 발거한 일자(2018.2.1.)를 기준으로 2018.2.1.에 발거한 영구치는 면책기간(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동안 발거한 것으로 이후에 치료를 받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영구치를 발거한 일자(2018.7.1.)를 기준으로 2018.7.1.에 발거한 영구치는 감액기간(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2년 미만) 동안 발거한 것으로 이후에 치료를 받더라도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 ☐ 2020.1.2. 이후 발거한 영구치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로 인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 지급금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치과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종료 후 진단과 관련된 직접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 (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치아우식증(충치)」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2(치아우식증(충치)), K04(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치아의 석회 성분이 녹거나 파괴되었을 때 또는 치수염 등의 원인으로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이 손상되어 치아를 잃게 되는 질환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충치라고 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치주질환(잇몸질환)」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5(치은염 및 치주질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치은(잇몸)염과 치주염으로 구분되며, 염증 반응이 치은조직에만 국한되었을 경우에는 치은(잇몸)염이라고 하고, 치은(잇몸)염을 방치해 치주인대와 치조골이 파괴되었을 때를 치주염이라 말하며, 일반적으로 잇몸질환이라 합니다.
- ③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치과병원, 치과의원, 국외의 의료관

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기 분류번호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단,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을 우선 적용합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질병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 (「영구치 발거」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영구치 발거」라 함은 치과의사가 영구치를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영구치를 뽑거나 제거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다만, 아래의 원인으로 발거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1. 보철준비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 등이 영구치 발거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 보철 치료를 위한 준비로서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 2. 교정 및 위치이상 : 교정치료를 위하여 발치하였거나 위치이상으로 심미적인 개선을 위해 발거한 경우
 - 3.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치아)를 발거한 경우

4. 맹출장애: 부분매복되거나, 완전매복되어 발치하는 경우

- ② 「영구치 발거」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치과병원, 치과의원,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6조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라 함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치과의사에 의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치과병원, 치과의원,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해당 영구치의 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를 시술할 목적으로 치조골(잇몸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이식재료('자가골',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등)를 이용하여 치조골(잇몸뼈)를 이식하는 시술로서 아래에 정한 골이식(BBG, Block Bone Graft), 골유도재생술(GBR, Guided Bone Regeneration) 및 상악동거상술(SL, Sinus Lifting)을 말합니다.

1. 골이식술(BBG, Block Bone Graft) : 골이식재를 치조골(잇몸뼈)이 부족한 부위에 이식하여 뼈를 형성해주는 방법을 말합니다.
2. 골유도재생술(GBR, Guided Bone Regeneration) : 뼈를 이식하고 그 공간에 잇몸 등의 다른 조직들이 차오르지 않고 뼈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차오를 수 있도록 막을 씌워 골 재생을 유도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3. 상악동거상술(SL, Sinus Lifting) : 상악 어금니 부위의 임플란트 시술에 적용되는 기술로서 상악동을 상부로 밀어올려 그 곳에 골이식을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측면에서 치조골(잇몸뼈)를 동그랗게 뚫어 접근하는 방법과 임플란트가 식립될 부분에 상악동을 밀어넣어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용어 해설>

「임플란트(Implant)」란, 점막 또는 골막층 하방, 그리고 골조직 내부 등의 구강 조직에 이물 성형재료를 매식한 후 고정성 또는 가철성 보철물을 삽입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7.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치료
8.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9. 치열교정 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10.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11. 골분할술(Ridge split technique), 골신장술(Distracted osteogenesis) 등 제6조(「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의 정의)에 정하지 않은 시술
12.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다음을 원인으로 발거하는 경우

대상질병	분류코드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K00
매몰치 및 매복치	K01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K03
잇몸 및 무치성 치조용기의 기타 장애	K06
치아열굴이상(부정교합포함)	K07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K08

주)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분류표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분류표에 따릅니다.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8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치과치료관련 증명서

가. 치과진료기록 사본

나. 아래 내용이 포함된 치과치료 진단서 및 치과

치료 확인서(회사양식)

(ㄱ) 발거한 영구치의 위치 또는 치아번호

(ㄴ) 해당 치아의 내원 당시의 치아상태

(ㄷ) 직접적인 치아 발거원인

(ㄹ) 치료받은 치과치료의 종류

(ㄴ) 치과치료 진단확정일 및 영구치 발거일

자, 치료종료(예정)일

다. 영구치 발거 전후의 X-ray 사진

라. 회사가 상기 서류 이외에 보험금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가로 요청하는 구강 내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

3. 진료비계산서(「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항목이 포함된 치과 진료비 영수증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단, 단체취급 특별약관을 부가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때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이 아닌 자가 청구하는 경우 법정상속인의 확인서 등)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치과치료 확인서(또는 치과치료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치과병원, 치과의원,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제9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사유 발생 당시 이 특

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10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무배당 삼성화재 치아보험 덴탈파트너(1904.4)(자동갱신형)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11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2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3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9.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 II (상해 및 질병)(영구치) 특별약관

제1조 (치아관련 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치아관련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치 : 타고난 이를 인공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자연적으로 난 치아를 말합니다. 단, 자연적으로 난 치아 중 치아수복물 및 치아보철물을 제외한 부분에 한합니다.

2. 영구치 : 유치(젓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 치아를 말합니다. 단,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 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 치아)는 제외합니다.
3. 유치 : 젓먹이 때 나서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치아를 말합니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2항에서 정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진단받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치과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치과병원, 치과의원,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제5조(「영구치 발거」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정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영구치 발거 1개당 아래에 정한 금액을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최초계약		갱신계약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부터 가입후 2년미만	가입후 2년이상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2. 상해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지급금액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② 제1항의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이하 「보험계약일」이라 합니다)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일을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로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일은 이 특별약관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예시>

보험계약일

2018년 1월 2일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2018년 4월 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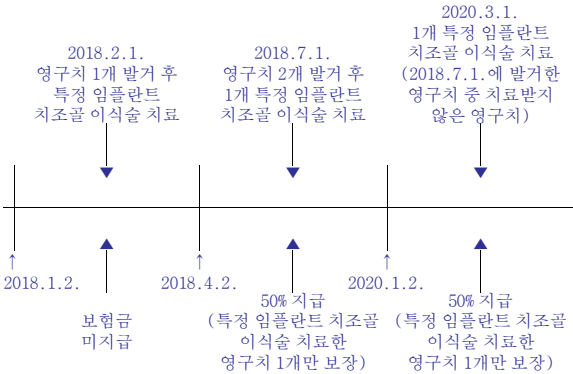
← 90일 →

※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보험금 지급 예시>

계약일 : 2018년 1월 2일

1.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한 경우



- 영구치를 발거한 일자(2018.2.1.)를 기준으로 2018.2.1.에 발거한 영구치는 면책기간(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동안 발거한 것으로 이후에 치료를 받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영구치를 발거한 일자(2018.7.1.)를 기준으로 2018.7.1.에 발거한 영구치는 감액기간(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2년 미만) 동안 발거한 것으로 이후에 치료를 받더라도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 2020.1.2. 이후 발거한 영구치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로 인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의 경우: 계약일(2018.1.2.)부터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 보장 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치과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종료 후 진단과 관련된 직접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 (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치아우식증(충치)」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2(치아우식증(충치)), K04(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치아의 석회 성분이 녹거나 파괴되었을 때 또는 치수염 등의 원인으로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이 손상되어 치아를 잃게 되는 질환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충치라고 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치주질환(잇몸질환)」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5(치은염 및 치주질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치은(잇몸)염과 치주염으로 구분되며, 염증 반응이 치은조직에만 국한되었을 경우에는 치은(잇몸)염이라고 하고, 치은(잇몸)염을 방치해 치주인대와 치조골이 파괴되었을 때를 치주염이라 말하며, 일반적으로 잇몸질환이라 합니다.
- ③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치과병원, 치과의원, 국외의 의료관

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기 분류번호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단,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을 우선 적용합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질병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 (「영구치 발거」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영구치 발거」라 함은 치과의사가 영구치를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영구치를 뽑거나 제거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다만, 아래의 원인으로 발거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1. 보철준비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 등이 영구치 발거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 보철 치료를 위한 준비로서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 2. 교정 및 위치이상 : 교정치료를 위하여 발치하였거나 위치이상으로 심미적인 개선을 위해 발거한 경우
 - 3.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치아)를 발거한 경우

4. 맹출장애: 부분매복되거나, 완전매복되어 발치하는 경우

- ② 「영구치 발거」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치과병원, 치과의원,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6조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라 함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치과의사에 의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치과병원, 치과의원,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해당 영구치의 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를 시술할 목적으로 치조골(잇몸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이식재료('자가골',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등)를 이용하여 치조골(잇몸뼈)를 이식하는 시술로서 아래에 정한 골이식(BBG, Block Bone Graft), 골유도재생술(GBR, Guided Bone Regeneration) 및 상악동거상술(SL, Sinus Lifting)을 말합니다.

1. 골이식술(BBG, Block Bone Graft) : 골이식재를 치조골(잇몸뼈)이 부족한 부위에 이식하여 뼈를 형성해주는 방법을 말합니다.
2. 골유도재생술(GBR, Guided Bone Regeneration) : 뼈를 이식하고 그 공간에 잇몸 등의 다른 조직들이 차오르지 않고 뼈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차오를 수 있도록 막을 씌워 골 재생을 유도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3. 상악동거상술(SL, Sinus Lifting) : 상악 어금니 부위의 임플란트 시술에 적용되는 기술로서 상악동을 상부로 밀어올려 그 곳에 골이식을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측면에서 치조골(잇몸뼈)를 동그랗게 뚫어 접근하는 방법과 임플란트가 식립될 부분에 상악동을 밀어넣어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용어 해설>

「임플란트(Implant)」란, 점막 또는 골막층 하방, 그리고 골조직 내부 등의 구강 조직에 이물 성형재료를 매식한 후 고정성 또는 가철성 보철물을 삽입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7.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치료
8.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9. 치열교정 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10.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11. 골분할술(Ridge split technique), 골신장술(Distracted osteogenesis) 등 제6조(「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의 정의)에 정하지 않은 시술
12.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다음을 원인으로 발거하는 경우

대상질병	분류코드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K00
매몰치 및 매복치	K01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K03
잇몸 및 무치성 치조용기의 기타 장애	K06
치아열굴이상(부정교합포함)	K07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K08

주)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분류표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분류표에 따릅니다.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8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치과치료관련 증명서
 - 가. 치과진료기록 사본
 - 나. 아래 내용이 포함된 치과치료 진단서 및 치과치료 확인서(회사양식)
 - (㉠) 발거한 영구치의 위치 또는 치아번호
 - (㉡) 해당 치아의 내원 당시의 치아상태
 - (㉢) 직접적인 치아 발거원인
 - (㉣) 치료받은 치과치료의 종류
 - (㉤) 치과치료 진단확정일 및 영구치 발거일자, 치료종료(예정)일

다. 영구치 발거 전후의 X-ray 사진

라. 회사가 상기 서류 이외에 보험금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가로 요청하는 구강 내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

3. 진료비계산서(「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항목이 포함된 치과 진료비 영수증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단, 단체취급 특별약관을 부가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때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이 아닌 자가 청구하는 경우 법정상속인의 확인서 등)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치과치료 확인서(또는 치과치료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치과병원, 치과의원,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제9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사유 발생 당시 이 특

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10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무배당 삼성화재 치아보험 덴탈파트너(1904.4)(자동갱신형)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11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2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3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10. 자동차사고 치아보철·크라운치료지원금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자동차사고」라 합니다)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치아보철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 치아 1개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자동차사고 치아보철지원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3.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자동차사고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 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치아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라 함은 [별표-상해관련1]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5급32항, 6급31항, 7급26항, 8급25항, 9급19항, 10급9항, 11급5항, 12급7항, 13급4항, 14급4항을 말합니다.
- ③ 제1항에서 치아보철치료라 함은 치아의 일부분이 없어지거나 기능을 상실했을 때 치아를 대체하여 주는 치료방법으로 크라운, 브릿지, 완전의치 및 임플란트 등을 말합니다.
- ④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⑤ 제4항의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
 - 가. 피보험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전 하던 중에 발생한 손해
 - 나.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 다.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손해

라.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마.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7.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나.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다.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3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은 경우 해당 자동차 보험의 보상처리확인서

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경우

(ㄱ) 자동차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차량피해 견적서, 차량피해사진 등)

(ㄴ) 진단서

다.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단, 단체취급 특별약관을 부가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때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이 아닌 자가 청구하는 경우 법정상속인의 확인서 등)

② 제1항 제2호 나. 목 (ㄴ)의 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4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삼성화재 치아보험 덴탈파트너(1904.4)(자동갱신형)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2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3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11. 영구치아 상실위로금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2항에서 정한 영구치아 상실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영구치아를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영구치아 1개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영구치아 상실위로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영구치아 상실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이하 「보험계약일」이라 합니다)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아를 상실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일을 「영구치아 상실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로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일은 이 특별약관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영구치아 상실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예시>



※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아를 상실한 경우에는 영구치아 상실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영구치아 상실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제3조(영구치아 상실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아 상실」을 수반하는 치아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치과의사」라 합니다)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종료 후 진단과 관련된 직접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영구치아 상실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영구치아 상실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영구치아 상실이라 함은 우식증(齲蝕症) 또는 치주병(齒周病), 상해 등에 의하여 치아가 뿌

리까지 손상되어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치아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치아를 발치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제3대구치(사랑니)를 발치한 경우
7. 교정 및 위치이상 : 교정치료를 위하여 발치하였거나 위치이상으로 심미적인 개선을 위하여 발치한 경우
8. 맹출장애 : 부분매복되었거나, 완전매복되어 발치한 경우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5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치과치료관련 증명서 등
 - 가. 치과진료기록 사본
 - 나.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치과치료 진단서 및 치과치료 확인서(회사양식)
 - (ㄱ) 발거한 영구치아의 위치(또는 치아번호) 및 발치일자
 - (ㄴ) 해당 영구치아의 내원 당시의 치아상태
 - (ㄷ) 직접적인 영구치아 발치원인
 - 다. 회사는 상기 서류 이외에 보험금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구치아 발치 전후의

X-ray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단, 단체취급 특별약관을 부가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때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이 아닌 자가 청구하는 경우 법정상속인의 확인서 등)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치과치료 확인서(또는 치과치료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치과병원, 치과의원,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제6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사유 발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무배당 삼성화재 치아보험 덴탈파트너(1904.4)(자동갱신형)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2조(환급금의 중도인출) 및 제13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1-12. 어린이 치아치료보장(발치/영구치상실/보철/치조골이식) 특별약관

제1조 (치아관련 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치아관련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연치 : 타고난 이를 인공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자연적으로 난 치아를 말합니다. 단, 자연적으로 난 치아 중 치아수복물 및 치아보철물을 제외한 부분에 한합니다.
2. 영구치 : 유치(젓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아를 말합니다. 단,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 치아)는 제외합니다.

3. 유치 : 젓먹이 때 나서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치아를 말합니다.
4. 발치(拔齒) : 치아를 제거하는 외과적 처치로서, 아래에서 정한 단순 발치, 정교한 발치 및 완전 매복된 치아의 발치를 말합니다.

구분	용어의 설명
단순 발치 (맹출치아 및 노출된 치근)	정상 맹출된 치아를 제거하는 치료술식으로 발치겸자 등 기구를 활용하지만 잇몸 절개, 치아분할 또는 골삭제 등을 하지 않고 정상 발치하는 경우를 말함
정교한 발치 (부분적으로 매복된 치아)	발치할 치아가 치조골에 부분적으로 매복되어 있는 경우 또는 파절된 치아를 제거하기 위한 시술이며 단순 발치가 불가능한 경우임
완전 매복된 치아의 발치	치관의 2/3이상이 치조골 또는 악골내에 매복된 경우이며 골삭제와 치아분할술이 필요한 치료술식임

제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5항에서 정한 어린이 치아치료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상해 또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치과병원, 치과의원,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제4조(「발치(단순, 정교, 완전매복치) 치료」의 정의)에 정한 발치(단순, 정교, 완전매복치)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아 1개당 아래에 정한 금액

을 발치(단순, 정교, 완전매복치) 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단순 발치 (맹출치아 및 노출된 치근)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0.5%
정교한 발치 (부분적으로 매복된 치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
완전 매복된 치아의 발치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5항에서 정한 어린이 치아치료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영구치아를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영구치아 1개당 아래에 정한 금액을 영구치아 상실위로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영구치아 상실위로금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

-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5항에서 정한 어린이 치아치료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진단받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 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치과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치과병원, 치과의원,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제7조(「영구치 발거」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정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한 해당 영구치보철치료비를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1.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 부터 가입후 2년미만	가입후 2년이상	
임플란트 (Implant)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단, 영구치 받거 1개당 지급)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단, 영구치 받거 1개당 지급)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단, 영구치 받거 1개당 지급)
가철성의치 (틀니, Denture)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단, 보철물당 지급. 연간 1회 한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단, 보철물당 지급. 연간 1회 한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단, 보철물당 지급. 연간 1회 한도)
고정성 가공의치 (브릿지, Bridge)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5% (단, 영구치 받거 1개당 지급)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단, 영구치 받거 1개당 지급)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단, 영구치 받거 1개당 지급)

2. 상해로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지급금액
임플란트 (Implant)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단, 영구치 받거 1개당 지급)
가철성의치 (틀니, Denture)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단, 보철물당 지급. 연간 1회 한도)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Bridge)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단, 영구치 받거 1개당 지급)

- ④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5항에서 정한 어린이 치아치료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진단받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 의사에

의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치과병원, 치과의원,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제7조(「영구치 발거」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 정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영구치 발거 1개당 시술방법에 따라 아래에 정한 금액을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 부터 가입후 2년미만	가입후 2년이상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	골이식술 (BBG)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5%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30%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30%
	골유도재생술 (GBR)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5%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상악동거상술 (SL)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2. 상해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

구분		지급금액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비	골이식술 (BBG)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30%
	골유도재생술 (GBR)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상악동거상술 (SL)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어린이 치아치료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이하 「보험계약일」이라 합니다)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아를 상실하거나, 「발치(단순, 정교, 완전매복치) 치료」, 「보철치료」,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일을 「어린이 치아치료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로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일은 이 특별약관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어린이 치아치료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예시>



※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아를 상실하거나, 「발치(단순, 정교, 완전매복치) 치료」, 「보철치료」,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어린이 치아치료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 ⑥ 제3항의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한도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로 합니다.

⑦ 제3항에서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상해로 1개의 치아에 2회 이상의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치료로 보아 1회에 한하여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⑧ 제3항에서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상해로 동일한 영구치에 복합형태의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보철치료 중 가장 높은 한 가지 치료항목의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예시>

- ☐ 피보험자가 상악에 총의치(전체틀니)와 임플란트를 복합적으로 치료 받는 경우(Implant Overdenture), 해당 치료 종료시 총의치(전체틀니)와 임플란트 보험금 중 한 가지 보험금만 지급합니다.

⑨ 제4항에서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상해로 영구치 발거 1개에 대해 복합형태의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 중 가장 높은 한 가지 치료항목의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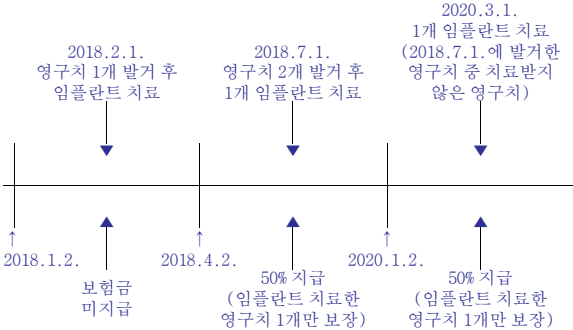
<예시>

- ☐ 피보험자가 영구치 1개 발거 후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골이식술(BBG)과 상악동거상술(SL)을 복합적으로 치료받는 경우, 해당 치료 종료시 상악동거상술(SL) 보험금만 지급합니다.

<「보철치료」 보험금 지급 예시(임플란트 치료)>

계약일 : 2018년 1월 2일

1.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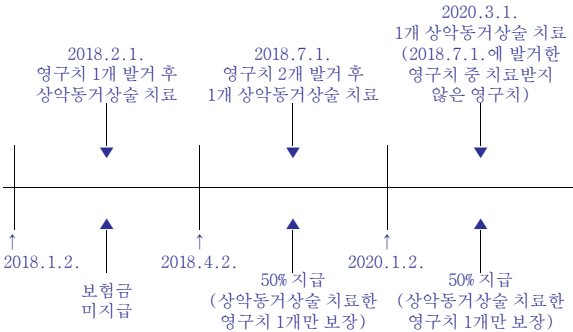
- ☐ 영구치를 발거한 일자를 기준으로 2018.2.1.에 발거한 영구치는 면책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동안 발거한 것으로 이후에 치료를 받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영구치를 발거한 일자를 기준으로 2018.7.1.에 발거한 영구치는 감액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2년 미만) 동안 발거한 것으로 이후에 치료를 받더라도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 ☐ 2020.1.2.이후 발거한 영구치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로 인한 보철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보철치료 지급금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 보험금 지급 예시(상악동거상술 치료)>

계약일 : 2018년 1월 2일

1.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원인으로 한 경우



- ☐ 영구치를 발거한 일자(2018.2.1.)를 기준으로 2018.2.1.에 발거한 영구치는 면책기간(계약일로부터 90일 이하) 동안 발거한 것으로 이후에 치료를 받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영구치를 발거한 일자(2018.7.1.)를 기준으로 2018.7.1.에 발거한 영구치는 감액기간(계약일로부터 90일 초과 2년 미만) 동안 발거한 것으로 이후에 치료를 받더라도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 ☐ 2020.1.2. 이후 발거한 영구치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로 인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 지급금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어린이 치아치료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치과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치과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종료 후 진단과 관련된 직접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해당 치과치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의 보철치료의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종료된 날의 전일이 속한 보험년도의 연간 보장한도 내에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 (「발치(단순, 정교, 완전매복치) 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발치(단순, 정교, 완전매복치) 치료」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서 발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준(이하 「발치 치료 급여인정 기준」이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중 국내의 치과병원, 치과의원,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구분		진료행위코드
단순 발치 (맹출치아 및 노출된 치근)	유치(Deciduous Tooth)	U4411
	전치(Anterior Tooth)	U4412
	구치(Posterior Tooth)	U4413
정교한 발치 (부분적으로 매복된 치아)	난발치(Complicated Extraction)	U4414
	단순매복치(Simple)	U4415
	복잡매복치[치아분할술을 실시 한 경우](Complex)	U4416
완전 매복된 치아의 발치	완전매복치[치관이 2/3 이상 치 조골 내에 매복된 치아의 골절제 와 치아 분할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Complete)	U4417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등의 개정으로 「발치(단순, 정교, 완전매복치) 치료」의 정의에 정한 발치 치료 외에 「급여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발치 치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치료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 (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치아우식증(충치)」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2(치아우식증(충치)), K04(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치아의 석회 성분이 녹거나 파괴되었을 때 또는 치수염 등의 원인으로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이 손상되어 치아를 잃게 되는 질환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충치라고 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치주질환(잇몸질환)」이라 함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5(치은염 및 치주질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치은(잇몸)염과 치주염으로 구분되며, 염증 반응이 치은 조직에만 국한되었을 경우에는 치은(잇몸)염이라 하고, 치은(잇몸)염을 방치해 치주인대와 치조골이 파괴되었을 때를 치주염이라 말하며, 일반적으로 잇몸질환이라 합니다.

- ③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치과병원, 치과의원,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기 분류번호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단,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을 우선 적용합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질병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 (영구치아 상실의 정의)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영구치아 상실」이라 함은 우식증(齲蝕症) 또는 치주병(齒周病), 상해 등에 의하여 치아가 뿌리까지 손상되어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치아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치아를 발치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7조 (「영구치 발거」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 및 제4항에서 「영구치 발거」라 함은 치과의사가 영구치를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영구치를 뽑거나 제거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다만, 아래의 원인으로 발거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 보철준비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 등이 영구치 발거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 보철 치료를 위한 준비로서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2. 교정 및 위치이상 : 교정치료를 위하여 발치하였거나 위치이상으로 심미적인 개선을 위해 발거한 경우
3.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치아)를 발거한 경우
4. 맹출장애 : 부분매복되었거나, 완전매복되어 발치하는 경우

② 「영구치 발거」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치과병원, 치과의원,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8조 (「보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보철치료」라 함은 치과의사에 의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치과병원, 치과의원,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해당 영구치의 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 Denture),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Bridge) 및 임플란트(Implant)의 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용어 해설>

1. 「가철성의치(틀니, Denture)」란, 일반적으로 틀니를 말하며, 영구치와 그와 연관된 조직이 결손 되었을 때, 인공적으로 대체하는 보철물을 장착하는 시술로서 국소의치와 총의치를 포함합니다. 국소의치(부분틀니, Partial Denture)는 전체 치아가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치아와 그 관련조직의 결손을 수복해주는 보철물을 말하며, 금관, 지대치 혹은 다른 고정성 가공의치(브릿지, Bridge) 및 점막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총의치(Complete Denture)는 영구치가 하나도 없는 환자에게 인공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하는 의치를 말하며, 영구치 또는 인공치의 치열 전체, 보통 상실(喪失)한 영구치와 주위 조직을 대신하는 인공 보철물입니다.
2.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Bridge)」란,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다리처럼 연결하여 보철물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치아가 결손이 되어 있을 때 결손이 된 부분에 대해 인접한 영구치를 지대치로 하고, 가공치를 지대치와 연결하여 구강 내에 영구접착 되는 보철물을 말합니다.
3. 「임플란트(Implant)」란, 점막 또는 골막층 하방, 그리고 골조직 내부 등의 구강 조직에 이물 성형재료를 매식한 후 고정성 또는 가철성 보철물을 삽입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제9조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라 함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치과의사에 의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치과병원, 치과의원,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해당 영구치의 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를 시술할 목적으로 치조골(잇몸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이식재

료 ('자가골',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등)를 이용하여 치조골(잇몸뼈)를 이식하는 기술로서 아래에 정한 골이식(BBG, Block Bone Graft), 골유도재생술(GBR, Guided Bone Regeneration) 및 상악동거상술(SL, Sinus Lifting)을 말합니다.

1. 골이식술(BBG, Block Bone Graft) : 골이식재를 치조골(잇몸뼈)이 부족한 부위에 이식하여 뼈를 형성해주는 방법을 말합니다.
2. 골유도재생술(GBR, Guided Bone Regeneration) : 뼈를 이식하고 그 공간에 잇몸 등의 다른 조직들이 차오르지 않고 뼈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차오를 수 있도록 막을 씌여 골 재생을 유도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3. 상악동거상술(SL, Sinus Lifting) : 상악 어금니 부위의 임플란트 시술에 적용되는 기술로서 상악동을 상부로 밀어올려 그 곳에 골이식을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측면에서 치조골(잇몸뼈)를 동그렇게 뚫어 접근하는 방법과 임플란트가 식립될 부분에 상악동을 밀어넣어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10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③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치열교정, 양악수술,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④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경우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제3대구치(사랑니)를 발치한 경우

2. 교정 및 위치이상 : 교정치료를 위하여 발치하였거나 위치이상으로 심미적인 개선을 위하여 발치한 경우

3. 맹출장애 : 부분 매복되었거나, 완전 매복되어 발치한 경우

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의 경우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2.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치료

3.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4. 치열교정 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5. 치열교정, 양악수술,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6.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다음을 원인으로 발거하는 경우

대상질병	분류코드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K00
매몰치 및 매복치	K01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K03
잇몸 및 무치성 치조용기의 기타 장애	K06
치아열굴이상(부정교합포함)	K07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K08

주)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분류표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분류표에 따릅니다.

⑥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항의 경우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2.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치료
3.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4. 치열교정 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5. 치열교정, 양악수술,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6. 골 분할술(Ridge split technique), 골신장술(Distracted osteogenesis) 등 제9조(「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의 정의)에 정하지 않은 시술

7.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다음을 원인으로 발거하는 경우

대상질병	분류코드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K00
매몰치 및 매복치	K01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K03
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기의 기타 장애	K06
치아열굴이상(부정교합포함)	K07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K08

주)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분류표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분류표에 따릅니다.

제11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치과치료관련 증명서

가. 치과진료기록 사본

나. 아래 내용이 포함된 치과치료 진단서 및 치과

치료 확인서(회사양식)

(ㄱ) 치료한 치아(보철치료 및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의 경우 발거한 영구

치)의 위치 또는 치아번호

(ㄴ) 해당 치아의 내원 당시의 치아상태

(ㄷ) 직접적인 치아의 치료원인(보철치료 및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의 경

우 발거원인)

- (ㄹ) 치료받은 치과치료의 종류(보존치료의 경우 충전치료재료 포함)
- (ㄴ) 치과치료 진단확정일, 치료시작일(보철 치료 및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술 치료의 경우 발거일자) 및 치료종료(예정)일

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행위코드가 기재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명세서

라.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치 발거 전후의 X-ray 사진

마. 회사가 상기 서류 이외에 보험금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가로 요청하는 구강 내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 자료

3. 진료비계산서(「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항목이 포함된 치과 진료비 영수증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단, 단체취급 특별약관을 부가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때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이 아닌 자가 청구하는 경우 법정상속인의 확인서 등)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치과치료 확인서(또는 치과치료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치과병원, 치과의원,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제12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유치 또는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거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사유 발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13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무배당 삼성화재 치아보험 덴탈파트너(1904.4)(자동갱신형)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보험계약일로 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항을 적용합니다.

제1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2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3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2. 상해 관련 특별약관

2-1. 골절 진단비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별표-상해관련 2] 골절 분류표에 정한 골절(이하 「골절」이라 합니다)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 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골절 진단비는 매사고 마다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4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배당 삼성화재 치아보험 덴탈파트너(1904.4)(자동갱신형)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2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3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



별 표



[별표 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구분	기간	지급이자
보장관련 보험금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 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 의 기간	1년 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 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만기환급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금리연동형보험은 일자 계산합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보험금의 지급절차」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다만, 상해·질병 관련 보장에 한합니다)
5.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별표-상해관련1]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

아래의 부상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2호와 관련되며, 법령 변경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상해 급별	상 해 내 용
1급	-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 (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텐트 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 척추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이성(회전성) 골절 -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근육, 근막 또는 피부 등 연부 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적용한다) - 화상, 좌창, 괴사창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인 상해 -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 급별	상 해 내 용
2급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 3.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5. 척추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또는 경추 골절(치돌기 골절을 포함한다) 혹은 탈구로 할로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7. 상완 신경총 상부 간부 또는 하부 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9.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10. 대퇴 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대퇴골 경부 분쇄 골절, 전자하부 분쇄 골절, 과부 분쇄 골절, 경골 과부 분쇄 골절 또는 경골 원위 관절내 분쇄 골절 12.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하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사지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 급별	상 해 내 용
3급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3. 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단적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4급에 해당한다) 6.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개술을 시행한 상해 7.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을 시행한 상해(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 8.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9. 견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상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11.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대퇴골 또는 경골 골절(대퇴골 골두 골절은 제외한다) 14. 대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슬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1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족근관절의 손상으로 족근골의 완전탈구가 동반된 상해 18.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9.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 급별	상 해 내 용
4급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4. 흉부 손상 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상해(기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도 포함한다) 5.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경 또는 흉강경을 포함한다) 6.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2개 이상의 주요 말초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에 적용한다) 8. 상완골 경부 골절 9. 상완골 간부 분쇄성 골절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에 적용한다) 11. 요골 원위부 골절과 척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아지 골절을 말한다) 12. 척골 근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지아 골절을 말한다) 13. 전완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 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5. 수근골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 16.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7.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18.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천골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 19.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2. 하퇴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거골 또는 종골 골절 24.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5. 사지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6. 화상, 좌창, 과사창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 급별	상 해 내 용
5급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안와 골절에 의한 복시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 4. 안정성 추체 골절 5. 상완 신경총 상부 간부 또는 하부 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6. 상완골 간부 골절 7.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9. 요골 경상돌기 골절 10. 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11. 수근 주상골 골절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15.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대퇴골 또는 근위 경골의 견열골절 18.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20. 슬개골 골절 21. 족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22.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그 밖의 족근골 골절(거골 및 종골은 제외한다) 24. 중족족근관절 손상(리스프랑 관절을 말한다) 25.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6개 이상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0. 다발성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 급별	상 해 내 용
6급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4. 심장 타박 5. 폐좌상(일측 폐의 50 페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인한 경우에 한한다) 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7.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상해 8.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외상성 상부관절와손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상완골 대결절 견열 골절 13. 상완골 원위부 견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 등에 해당한다) 14.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요골간부 또는 원위부 관절외 골절 18. 요골 경부 골절 19. 척골 주두부 골절 20.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21. 다발성 수근중수골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 22.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슬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5. 반월상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족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원위 경비골 이개 28.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30.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3~5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1.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2.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 급별	상 해 내 용
7급	1. 다발성 안면 두개골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 2. 복시를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 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5. 쇄골 골절 6. 견갑골 골절(견갑골극,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구돌기를 포함한다) 7.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 8.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척골 경상돌기 기저부 골절 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12.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 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3.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4. 주상골 외 수근골 골절 15. 수근부 주상골·월상골간 인대 파열 16. 수근중수골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 17. 다발성 중수골 골절 18. 중수수지관절의 골절 및 탈구 19.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0.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비골 간부 골절 또는 골두 골절 23.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족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6.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 급별	상 해 내 용
8급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등의 안면 두개골 골절 3. 외상성 시신경병증 4.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복합 고막 파열 6.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3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 8.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횡돌기) 또는 후궁 골절 9.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관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을 말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중수골 골절 13. 수지골의 근위지간 또는 원위지간 골절 탈구 14. 다발성 수지골 골절 15. 무지 중수지관절 측부인대 파열 16.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슬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8.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수족지골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사지의 근 또는 건 파열로 1~2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사지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사지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24. 사지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나 국소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6. 기타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 급별	상 해 내 용
9급	1.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 2개 이하의 단순 늑골골절 3.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흉골 골절 6. 추간판 탈출증 7. 흉쇄관절 탈구 8.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요수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수근골간관절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0.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수지관절 탈구 12. 슬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건열골절 등 재불완전골절 16.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수족지 신전건 1개의 파열로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8. 사지의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19.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0.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0급	1. 3cm 이상 안면부 열상 2. 안검과 누소관 열상으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3. 각막, 공막 등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 4. 견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6. 수족지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하지 3대 관절의 혈관절증 8.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0.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1급	1. 뇌진탕 2.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3.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4. 수족지골 골절 또는 수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 급별	상 해 내 용
12급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2. 3cm 미만 안면부 열상 3. 척추 염좌 4. 사지 관절의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 5. 사지의 열상으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6. 사지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3급	1. 결막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 단순 고막 파열 3. 흉부 타박상으로 늑골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4급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 수족지 관절 염좌 3. 사지의 단순 타박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영역별 세부 판정기준에 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의 영역별 세부지침을 따릅니다.

[별표-상해관련2]

골절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골절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분류항목	분류번호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S02
2. 머리의 으깬손상	S07
3. 상세불명의 머리손상	S09.9
4. 목의 골절	S12
5.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S22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32
7. 어깨 및 위팔의 골절	S42
8. 아래팔의 골절	S52
9.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S62
10. 대퇴골의 골절	S72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82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S92
13. 여러 신체 부위를 침범한 골절	T02
14.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08
15.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0
16.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2
17.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골절	T14.2
18. 척추 및 척수의 출산손상	P11.5
19. 출산손상으로 인한 두개골골절	P13.0
20. 두개골의 기타 출산손상	P13.1
21. 대퇴골의 출산손상	P13.2
22. 기타 긴뼈의 출산손상	P13.3
23. 출산손상으로 인한 쇄골의 골절	P13.4
24. 기타 골격 부분의 출산손상	P13.8
25. 상세불명의 골격의 출산손상	P13.9

주) 제8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상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도성 특별약관



1. 만기 자동갱신 특별약관

제1조 (계약의 갱신에 관한 사항)

① 계약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고 갱신되기 직전 계약(이하 「갱신전 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1. 갱신될 계약의 보험기간이 회사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기간 내일 것
2.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에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3.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단, 갱신일 이후 갱신전 계약의 최종회차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보장보험료에 한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정상적으로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계약의 보장은 갱신전 계약에 의한 보장이 끝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에게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갱신 요건, 보장내용 변경내역, 갱신보험료 및 갱신 절차 등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 별도의 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제2조 (갱신계약의 보험계약 적용 특칙)

제1조(계약의 갱신에 관한 사항)에 따라 갱신된 계약(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의 경우 아래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따릅니다.

1. 갱신시 제도 및 보험료의 적용

가. 갱신계약의 약관은 갱신전 계약의 약관을 적용하고, 갱신계약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이하 「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라 합니다)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단,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약관이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2. 갱신시 보험기간의 운영

가.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갱신계약의 갱신은 회사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기본계약 및 특별약관의 갱신종료나이 계약해당일까지로 합니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갱신계약의 갱신일부터 회사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갱신종료나이의 계약해당일까지가 가.목의 보험기간 미만일 경우 그 잔여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하여 갱신되는 것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회사의 사업방법서를 따릅니다.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고에 대하여 갱신전 계약에서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3. 갱신시 기본계약 및 특별약관의 가입 제한

가. 갱신전 계약에서 기본계약 및 특별약관(세부 보장별 소멸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부보장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소멸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차회 이후 갱신시에는 해당 기본계약 및 특별약관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기본계약 및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소멸사유 발생 이후 이미 납입한 해당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제3조 (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와 갱신계약의 해제)

- ① 계약자가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무배당 삼성화재 치아보험 덴탈파트너(1904.4)(자동갱신형)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납입최고(독촉)하며,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갱신계약을 해제합니다.
- ② 회사는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제4조 (갱신일 이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하는 경우 연체된 보험료의 적용)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1항에서 정한 연체된 보험료는 갱신일부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납입이 연체된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2.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제1조 (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약관을 포함합니다. 이하 「보험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의 청약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 ④ 보험계약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보험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이륜자

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이륜자동차로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 ③ 제2항에서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포함합니다.
 - 1.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 2.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
 - 3.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
-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변경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⑤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관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등을 주된 판단자료로 하여 결정합니다.

제3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험계약을 따릅니다.

3.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제1조 (보험료납입)

- ①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부터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의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하거나 급여이체를 통하여 납입합니다.
- ②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계약자의 지정 금융기관 지정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자동이체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정 금융기관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를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보험계약(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별약관을 포함합니다. 이하 「보험계약」이라 합니다) 「보험계약의 성립」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2조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 또는 급여이체일자는 이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제3조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험계약을 따릅니다.

4. 단체취급 특별약관

제1조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특별약관을 포함합니다. 이하 「보험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단체취급계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①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 또는 피보험자는 다음 중 한 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 1.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2.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명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 3.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명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 ② 계약자는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 내지 단체의 소속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원이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단체에 소속된 피보험자수가 최초 계약시 5명 이상(이하 「피보험자단체」라 합니다)이거나 단체에 소속된 계약자수가 최초 계약시 5명 이상(이하 「계약자단체」라 합니다)이어야 합니다. 또한, 단체 소속원의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를 피보험자로 할 수 있습니다.

제2조 (대표자의 선정)

단체의 대표자 또는 직책상 대표자를 대리할 수 있는 자 또는 제1조(적용범위) 제2항에서 정한 계약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합니다.

제3조 (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 ① 단체취급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제2조(대표자의 선정)에서 정한 대표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② 회사의 보장은 회사가 승인한 이후부터 시작되며 회사가 승인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서면이 회사에 접수된 때를 승인한 때로 봅니다.
 1. 피보험자단체에 대한 단체취급계약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시에 해당 피보험자의 계약을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변경된 보험료를 받고, 추가 또는 환급되는 책임준비금은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 증가나 교체시에 회사가 받아야 할 책임준비금차액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보장은 책임준비금을 정산한 후 변경된 보험료를 납입하는 날부터 시작합니다.

2. 피보험자단체에 대한 단체취급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증가 또는 교체될 경우에 암과 같이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 보장에 있어서는, 피보험자 증가시에는 책임준비금을 정산한 후 변경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적용되며, 피보험자 교체시에는 회사의 승인일부터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적용됩니다.

3. 계약자단체에 대한 단체취급계약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수의 감소시에 해당 피보험자의 계약을 개별계약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회사는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라 새로이 교체되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 변경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될 수 있습니다.

제4조 (적용보험료)

- ① 계약자수 또는 피보험자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단체취급보험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②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수가 감소하여 5명 미만인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으며, 이후 피보험자수가 증가하여 5명 이상이 된 때에는 다시 제1항을 적용합니다.

제5조 (보험료납입)

- ① 보험료는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와 회사가 정한 날에 대표자가 계약자를 대리하여 보험료를 일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급여이체 및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일괄납입으로 봅니다.
- ② 회사는 납입보험료에 대한 영수증을 대표자에게 드립니다. 다만,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이거나 계약자단체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별로 납입증명서를 발행하여 드립니다.

제6조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 특별약관은 해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속단체를 이탈하였을 때
 - 2. 보험료를 일괄하여 납입하지 않았을 때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특별약관이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는 단체취급 보험료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7조 (적용특칙)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별로 보험증권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의 보험계약에서 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험계약을 따릅니다.

5.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험계약(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약관을 포함합니다. 이하 「보험계약」이라 합니다)에 적용합니다.

제2조 (특별약관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②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3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① 계약자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명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대리청구인은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 지정 또는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제5조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

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 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 (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험계약을 따릅니다.

<참고> 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법규1] 의료법	II - 3
[법규2] 의료급여법 시행령	II - 4
[법규3] 의료법 시행규칙	II - 5
[법규4] 상법	II - 6
[법규5] 민법	II - 7
[법규6] 전자서명법	II - 7
[법규7] 소비자기본법	II - 8
[법규8] 자동차 관리법	II - 9
[법규9]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II - 9
[법규10]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II - 10
[법규1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II - 10
[법규12] 도로교통법	II - 11
[법규1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II - 12
[법규1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II - 12
[법규15]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II - 14
[법규16]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II - 15
[법규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약칭: 재난안전법)	II - 17
[법규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약칭: 재난안전법 시행령)	II - 17
[법규19] 민사소송법	II - 19
[법규20] 형법	II - 20
[법규21]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II - 26
[법규2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II - 27
[법규2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II - 29
[법규24] 건설기술 진흥법	II - 32
[법규2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II - 32
[법규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II - 33
[법규27] 도시가스사업법	II - 34
[법규28] 산업안전보건법	II - 34
[법규2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II - 34
[법규30] 송유관 안전관리법	II - 35
[법규3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II - 35
[법규32] 위험물안전관리법	II - 36
[법규3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II - 36
[법규34]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II - 37
[법규35] 전기공사업법	II - 37
[법규36] 주택법	II - 37

[법규37]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II - 38
[법규38]	지역보건법	II - 38
[법규39]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II - 39
[법규40]	약사법	II - 39
[법규41]	고용보험법	II - 41
[법규4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II - 43
[법규4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II - 45
[법규4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II - 45
[법규4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II - 46
[법규46]	국민건강보험법	II - 46
[법규4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II - 47
[법규48]	공직선거법	II - 50
[법규49]	한의학 육성법	II - 51
[법규5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II - 51
[법규51]	공중위생관리법	II - 53
[법규52]	도로법	II - 53
[법규53]	식품위생법	II - 54
[법규54]	아동복지법	II - 54
[법규55]	영유아보육법	II - 54
[법규56]	유통산업발전법	II - 55
[법규57]	초·중등교육법	II - 55
[법규58]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II - 55
[법규5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II - 56
[법규6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II - 58
[법규61]	전기통신사업법	II - 58
[법규6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II - 58

* 약관에서 인용한 법·규정은 2019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의료법

내용

제3조(의료기관)

-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09.1.30., 2011.6.7.>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의원
 - 나. 치과의원
 -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병원
 - 나. 치과병원
 - 다. 한방병원
 -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마. 종합병원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원장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08.2.29., 2010.1.18.>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3.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에있는 자
 5.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5호에 따른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의 자리가 빈 때에는 새로 위원을 임명하고,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 ⑥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를 둔다.
- ⑦ 그 밖에 위원회·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의료급여법 시행령

내용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 ① 법 제10조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3.12.30., 2005.7.5., 2013.12.11.>
 1. 삭제 <2005.7.5.>
 2. 삭제 <2005.7.5.>
- ② 삭제 <2005.7.5.>
-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기금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항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외에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라 한다)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다. <개정 2004.6.29.>
-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별표 1 제1호 라목·마목, 같은 표 제2호마목·바목 및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매 30일간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6.29., 2007.2.28., 2008.2.29., 2010.3.15., 2012.6.7., 2014.7.16., 2017.12.29.>
 1. 1종수급권자 : 2만원
 2. 2종수급권자 : 20만원
- ⑥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서 제5항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다만, 초과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수급권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4.6.29., 2007.2.28., 2009.3.31.>
 1. 1종수급권자 : 매 30일간 5만원
 2. 2종수급권자 : 연간 80만원. 다만,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연간 120만원으로 한다.
-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초과금액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4.6.29., 2008.2.29., 2010.3.15.>

[법규3]

의료법 시행규칙

내용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고, 그 시설규격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3]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제34조 관련)

1~11(생략), 12~20(생략)

시설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조산원
11의2. 탕전실	1 (관련 한의 과 진료과 목을 두고 탕전을 하 는 경우에 만 갖춘다)	1 (관련 한의 과 진료과 목을 두고 탕전을 하 는 경우에 만 갖춘다)	1 (탕전을 하 는 경우에 만 갖춘다)			1 (탕전을 하 는 경 우에만 갖춘다)	

[별표4]의료기관의 시설규격

1. (생략)

2. 중환자실

-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전(無停電)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 라. 병상 1개당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환자실(이하 "신생아중환자실"이라 한다)의 병상 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 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 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모니터, 병상 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호흡기, 병상 수의 70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엠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기를 갖추어야 한다.
-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는 1.2명(신생아 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내용

- 자. 중환자실에 설치하는 병상은 벽으로부터 최소 1.2미터 이상, 다른 병상으로 부터 최소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차. 중환자실에는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카. 중환자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압격리병실은 최소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법규4]

상법

내용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31.>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본조신설 1991.12.31.]

제657조(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신설 1991.12.31.>

[법규5]

민법
내용
제27조 (실종증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이내의 혈족 2. 4촌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전문개정 1990.1.13.]

[법규6]

전자서명법
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는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는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전문개정 2001.12.31.]

소비자기본법

내용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 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 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 다.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2.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3.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 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50인 이상의 소비자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 나. 정관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 다.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 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법규8]

자동차 관리법

내용

제3조(자동차의 종류)

-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 ② 제1항에 따른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5.24., 2013.3.23.>
-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법규9]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내용

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9.25., 2010.2.5., 2011.11.25.>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2.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3.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
 4.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5.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법규10]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내용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그 규모별 세부기준 및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7.7., 2017.1.6.>

[법규1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내용

제2조(건설기계 범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5.>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삭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3.21., 2013.3.23., 2014.1.28., 2014.11.19. 2014.11.19., 2017.3.21., 2017.7.26., 2017.10.24.>

(생략)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자동차
- 2) 건설기계
- 3) 원동기장치자전거
- 4) 자전거
-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생략)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 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27.>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8.3.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규1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법규1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내용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08.11.26., 2009.11.27., 2011.12.8., 2011.12.30., 2012.11.23., 2013.3.23., 2015.1.28., 2016.1.6., 2016.1.22., 2019.2.12.>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단일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주로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주로 시·군·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 라. 시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형·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내용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와 관계없이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이나 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그 소속원(산업단지 관리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소속원을 말한다)만의 통근·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기관·연구기관 등 공법인

2) 회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단지 등의 관리기관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 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유골을 포함한다)를 운송하는 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18.>

1. “손해보험회사”라 함은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보험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특약부화재보험”이란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손해와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3. “특수건물”이란 국유건물·공유건물·교육시설·백화점·시장·의료시설·은행·호텔·숙박업소·다중이용업소·운수시설·공장·공동주택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화재의 위험이나 건물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경과실(輕過失)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4.18.>
- ②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5.19.]

제16조(안전점검)

- ① 협회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보험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해당 특수건물의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의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건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안전점검 결과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도지수(「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정한 화재위험도지수를 말한다)가 낮은 특수건물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는 건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험도가 낮은 특수건물
 3.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는 건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험도가 낮은 특수건물
- ② 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한 특수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의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 ③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 ④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응하지 아니하면 협회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그에 대한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협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때에 어떠한 명목의 비용도 받을 수 없다.
-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5.19.]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용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7., 2017.10.17.>

제2조 (특수건물)

- 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한다. <개정 1997.6.13., 1998.4.1., 1999.5.24., 2001.7.7., 2002.12.5., 2003.6.30., 2003.11.29., 2008.2.29., 2009.7.27., 2009.8.6., 2010.12.7., 2012.1.31., 2014.7.7., 2016.8.11., 2017.10.17.>
1.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다만, 대통령 관저(官邸)와 특수용도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건물을 제외한다.
 - 1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 한다) 또는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은 제외한다.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6.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7. 「방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9.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행하는 공제중 신채손해상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을 제외한다.
 10. 다음 각 목의 영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내용

- 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11.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다만,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행하는 공제중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건물을 제외한다.
 1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단지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한다.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14. 층수가 11층이상인 건물. 다만, 아파트(제12호에 따른 아파트는 제외한다)·창고 및 모든 층을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건물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행하는 공제중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을 제외한다.
 1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7.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驛舍) 및 역 시설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행하는 공제 중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은 제외한다.
 18.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실내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건물
- ② 제1항제12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층수계산방법은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되,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용도가 명백한 계단실 또는 물탱크실인 경우에는 층수로 산입하지 아니하며, 지하층은 이를 층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개정 1974.12.31., 1991.9.3., 1997.6.13., 2002.12.5., 2017.10.17.>

[법규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약칭: 재난안전법)

내용

제76조(재난 보험등의 가입 등)

① 국가는 국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노력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 관련 보험·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를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소유·관리 또는 점유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손해의 보상내용을 충족하는 보험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험등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6.1.7., 2017.1.17.>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

2. 삭제<2017.1.17.>

3. 그 밖에 재난이 발생할 경우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시설

③ 제2항에 따른 보험등의 종류, 보상한도액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6.1.7.>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험등의 가입관리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정적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에 보험등의 가입관리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6.1.7., 2017.7.26.>

⑤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와 공제회비의 일부, 보험등의 운영과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7.>

[전문개정 2010.6.8.]

[제목개정 2016.1.7.]

[법규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약칭: 재난안전법 시행령)

내용

제83조의2(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

법 제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3에 따른 시설(이하 "가입대상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1.6.]

제83조의3(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보상한도액 등)

①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한도액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2.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내용

②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이하 "가입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소유자
2. 가입대상시설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자
3.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가 있는 경우: 관리자

③ 가입의무자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보험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까지) 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1. 별표 3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가입대상시설: 해당 가입대상시설에 대한 허가·등록·신고·면허 또는 승인(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2. 별표 3 제8호부터 제19호까지에 해당하는 가입대상시설: 해당 가입대상시설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

[본조신설 2017.1.6.]

[별표 3] <신설 2017. 1. 6.>

제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제83조의2 관련)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3.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대상 물류창고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6.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
8.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
9. 「경륜·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승차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10.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11.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되는 지하도상가
12.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지하상가
13.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1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16.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17.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이하의 아파트(「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및 부속건물
18. 「한국마사회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마장
19.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민사소송법

내용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 ① 소장이 제249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 ② 원고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④ 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으며, 원고가 소장에 인용한 서증(書證)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4.12.30.]

제266조(소의 취하)

- ①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 ②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 ③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다.
- ④ 소장을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상대방이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 ⑥ 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날부터,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항의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69조(반소)

- ①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 ② 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반소에 관하여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9조(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 ① 항소장이 제397조제2항의 규정에 어긋난 경우와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원심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내용

- ② 항소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와,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목개정 2014.12.30.]

제402조(항소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 ① 항소장이 제397조제2항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재판장등이 제3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항소장의 부분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소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항소심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 ② 항소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39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심재판장이 항소장을 각하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4.12.30.]

제412조(반소의 제기)

- ①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 ② 상대방이 이익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는 반소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425조(항소심절차의 준용)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규20】

형법

내용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제170조(실화)

- ① 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②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4장 살인의 죄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내용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 ①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6.>

제258조의2(특수상해)

-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16.1.6.]

내용

제259조(상해치사)

-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 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66조(과실치상)

-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내용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0장 협박의 죄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제297조의2(유사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12.18.]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전문개정 1995.12.29.]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내용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2018.10.16.>
-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2018.10.16.>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제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2.12.18.> [본조신설 2010.4.15.]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1조(특수절도)

- ①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12.29.>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34조(특수강도)

-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내용

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제336조(인질강도)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38조(강도살인·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339조(강도강간)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제340조(해상강도)

- ①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강간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제34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33조, 제334조, 제336조 또는 전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343조(예비, 음모)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제345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내용
제42장 손괴의 죄 제369조(상해, 존속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법규21]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내용
제4조(단체등의 구성·활동)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수괴(首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수괴·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에 따른 죄 중 다음 각 목의 죄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중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의 죄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제1항(살인),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제255조(예비, 음모)의 죄 「형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중 제314조(업무방해),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의 죄 「형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 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제1항(해상강도)·제2항(해상강도상해 또는 치상), 제341조(상습범), 제343조(예비, 음모)의 죄 -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형법」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을 포함한다) ③ 타인에게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그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4.12.3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내용

제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 ① (생략)
-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 제1항에 따른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11., 2018.12.11.>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意的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 ②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 ③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수적 동의사항은 서비스 제공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여야 하며, 선택적 동의사항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용정보주체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3.11.>

내용

- ⑥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11.>
1. 신용정보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2.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6.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협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7.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및 기업의 과점주주, 최대출자자 등 관련인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⑦ 제6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5.3.11.>
- ⑧ 제6항제3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11.>
- ⑨ 제8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 ⑩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身元)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 ⑪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미리 개별적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1.>

내용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11.>

1. 개인이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이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한 경우
2.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32조제6항 각 호의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법규2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용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 ① 삭제 <2015.9.11.>
-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9.11.>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한다)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 ③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무선 통신을 통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1.>
- ④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정보 제공 동意的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意的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동의를 받는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5.9.11.>
- ⑤ 제4항의 방식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意的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1.>
 1.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특성·위험도
 2.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업무 또는 업종의 특성
 3.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 신용정보주체의 수

내용

- ⑥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의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9.11.>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의 효력기간
- ⑦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를 서면, 전자적 기록 등으로 확인하고, 확인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개정 2015.9.11.>
- ⑧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5.9.11] [[시행일 2016.3.12]]
1.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를 설정·유지할 수 없는지 여부
 2.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함으로써 제공·활용되는 개인신용정보가 신용정보회사등과의 상거래관계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신용정보주체가 그 신용정보회사등에 신청한 상거래관계에서 제공하기로 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그 신용정보회사등과 별도의 계약 또는 약정을 체결한 제3자가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3.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지 여부
- ⑨ 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라 필수적 동의 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는 경우 동의서 양식을 구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정보주체가 각 동의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1.>
- ⑩ 법 제32조제6항제4호에서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말한다. <개정 2011.8.17., 2015.9.11., 2017.1.10.>
1.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하거나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2.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3. 행정기관이 인가·허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4. 해당 기업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기업의 대표자 및 제2조제1항제3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5. 제2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또는 어음·수표 소지인이 어음·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변제 의사 및 변제자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어음·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받기 위한 목적

내용

6. 「민법」 제450조에 따라 지명채권을 양수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명채권의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 가. 지명채권의 양도인이 그 지명채권의 원인이 되는 상거래관계가 설정될 당시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에 대하여 해당 채무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 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지명채권의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 ⑪ 법 제32조제6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5.9.11.>
 1.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식별정보(제29조에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이용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하거나 그 상거래를 하려는 타인에게 자신의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한 자
 2. 부정한 목적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위조·변조되거나 허위인 신용정보를 제공한 자
 3. 대출사기, 보험사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 또는 이와 유사한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자
 5. 그 밖에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⑫ 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2조제7항 본문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알리는 경우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하는 경우에 그 제공의 이유 및 그 알리거나 공시하는 자별로 알리거나 공시하는 시기 및 방법은 별표 2의2와 같다.
- ⑬ 법 제32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8.17., 2015.9.11.>
- ⑭ 법 제32조제8항에서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제공받는 자의 신용정보 관리·보호 체계를 말한다. <개정 2011.8.17., 2015.9.11.>

[법규24]

건설기술 진흥법

내용

제85조(벌칙)

- ①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다리,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에서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損壞)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위험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6조(벌칙)

- ① 업무상 과실로 제85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업무상 과실로 제85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규2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내용

제38조(벌칙)

- ① (생략)
-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고압가스 시설을 손괴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禁錮)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 ④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7.12.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내용

제3조(처벌의 특례)

-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016.12.2.>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종사자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종사자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종사자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전문개정 2011.4.12.]

[법규27]

도시가스사업법

내용

제48조(벌칙)

① ~ ⑧ (생략)

⑨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죄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⑩ ~ ⑬ (생략)

[법규28]

산업안전보건법

내용

제66조의2(벌칙)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2.6.]

[법규2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내용

제64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63조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로 제63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7.>

[법규30]

송유관 안전관리법

내용

제13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併科)할 수 있다.
1. 송유관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송유관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석유의 원활한 수송을 방해한 자
 2.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자
-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송유관설치자등의 승낙 없이 송유관을 조작함으로써 석유의 원활한 수송을 방해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④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⑤ 제2항의 죄를 범하여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전문개정 2008.3.28.]

[법규3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내용

제65조(벌칙)

- ①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의 가스시설을 손괴(損壞)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를 가져오게 하여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스용품을 개조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개조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제3항의 죄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傷害)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 ⑧ (생략)

[법규32]

위험물안전관리법

내용

제34조(벌칙)

- ①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6.1.27.>
-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6.1.27.>

[법규3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내용

제25조(장기이식의료기관)

- ① 장기등의 이식을 위하여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기이식의료기관(이하 "이식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 ② 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 ③ 이식의료기관이 아니면 장기등의 이식을 위하여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할 수 없다. 다만, 이식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장기 등을 적출할 수 있다.

제47조(벌칙)

-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사 또는 진료담당의사가 업무상 과실로 뇌사조사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뇌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뇌사판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7.10.24.>
-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7.10.24.>
- ③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7.10.24.>

[법규34]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내용

제30조(벌칙)

- ① 제3조에 따른 저수지·댐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저수지·댐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규35]

전기공사업법

내용

제41조(벌칙)

- ① 업무상 과실(過失)로 제4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업무상 과실로 제40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12.26.]

[법규36]

주택법

내용

제98조(벌칙)

- ① 제33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또는 제70조를 위반하여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시공자·감리자·건축구조기술사 또는 사업주체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9조(벌칙)

- ① 업무상 과실로 제98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업무상 과실로 제98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규37]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내용

제5조(과실범)

- ①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조제2항 또는 제4조제3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 ③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조제3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법규 38]

지역보건법

내용

제10조(보건소의 설치)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

제12조(보건의료원)

보건소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가목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보건지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내용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 ① 시장[도농복합형태(都農複合形態)의 시의 시장을 말하며, 읍·면 지역에서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군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시·구의 관할구역의 도서지역에는 해당 시장·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군 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행정구역이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시 또는 구 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 ②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보건진료소의 설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약사법

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09.12.29., 2010.1.18., 2011.6.7., 2013.3.23., 2014.3.18., 2016.12.2., 2017.10.24.>

1. "약사(藥事)"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조제·감정(鑑定)·보관·수입·판매[수여(授與)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2.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약국"이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약국제제(藥局製劑)를 포함한다]를 하는 장소(그 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 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예외로 한다.
4. "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 가.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 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 다.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5. "한약"이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6. "한약제제(韓藥製劑)"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내용

7. "의약품(醫藥外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제4호나 목 또는 다목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輕減)·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 나.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 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8. "신약"이란 화학구조나 본질 조성이 전혀 새로운 신물질의약품 또는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복합제제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9. "일반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 가. 오용·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
 - 나. 질병 치료를 위하여 의사나 치과의사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 다. 의약품의 제형(劑型)과 약리작용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
10. "전문의약품"이란 일반의약품이 아닌 의약품을 말한다.
11.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12. "복약지도(服藥指導)"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 방법, 부작용, 상호 작용이나 성상(性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
 - 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13. "안전용기·포장"이란 5세 미만 어린이가 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용기나 포장을 말한다.
14. "위탁제조판매업"이란 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제조판매품목 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의약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15. "임상시험"이란 의약품 등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藥動)·약력(藥力)·약리·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는 시험(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6. "비임상시험"이란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물질의 성질이나 안전성에 관한 각종 자료를 얻기 위하여 실험실과 같은 조건에서 동물·식물·미생물과 물리적·화학적 매체 또는 이들의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17.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이란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한 생체시험으로서 동일 주성분을 함유한 두 제제의 생체이용률이 통계학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험을 말한다.
18. "회귀의약품"이란 제4호에 따른 의약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정을 받은 의약품을 말한다.
 - 가. 「회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회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내용

- 나. 적용 대상이 드문 의약품으로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
19. "국가필수의약품"이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거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법규41]

고용보험법

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2010.1.27., 2010.6.4., 2011.7.21.>

1. "피보험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 나.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 한다)
- (이하 생략)

제40조(구직급여의 지급 요건)

-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②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을 기준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1.27.>

제51조(훈련연장급여)

- ① 직업안전기관의 장은 수급자격자의 연령·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이 필요하면 그 수급자격자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내용

-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가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는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훈련연장급여"라 한다)의 지급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한도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훈련대상자·훈련 과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6.4.>

제52조(개별연장급여)

-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그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개별연장급여"라 한다)는 6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급한다.

제53조(특별연장급여)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의 급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는 60일의 범위에서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직 후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수급자격자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연장하여 지급하는 구직급여(이하 "특별연장급여"라 한다)를 지급하려면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구직급여는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년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폐업사유가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본조신설 2011.7.2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내용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인진단)

-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1장을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려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외동포 및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 2013.1.25., 2015.8.3., 2016.06.30., 2016.12.30>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대상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그 장애상태가 영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기준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외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뢰서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장애인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1.18.>
-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인진단을 의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 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0.3.12., 2010.3.19., 2011.2.1>

제4조(장애인등록증 교부 등)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진단 결과나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카드를 작성하고,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장애인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 또는 제3항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는 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와 통합된 등록증으로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6.6.30.>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내용

- ④ 장애인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장애인등록증과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제6조(장애등급 조정)

- ① 장애인은 장애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등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등급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애등급의 조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에 장애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장애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진단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진단서를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진단결과에 대하여 보다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정도에 관한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0.3.12., 2010.3.19., 2011.2.1.>
-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진단 결과나 장애정도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장애등급을 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상태 확인)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여 장애상태에 맞는 장애등급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상태에 현저한 변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통보서를 해당 장애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③ 장애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장애진단 및 장애등급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3.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8.>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협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협이나 중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6. "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7. "응급의료기관등"이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전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말한다.
8.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8.4.]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이 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8.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용

제2조(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08.6.13., 2010.3.19.>

1. 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2.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법규4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내용

제7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 ①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의 허가·인가·등록·신고수리(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하는 행정기관(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허가등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2. 다중이용업소의 상호 및 주소
 3. 다중이용업의 업종 및 영업장 면적
- ② 허가관청은 다중이용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受理)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의 재개(再開)
 2. 영업 내용의 변경
 3. 다중이용업주의 변경 또는 다중이용업주 주소의 변경
 4. 다중이용업소 상호 또는 주소의 변경

[전문개정 2011.5.30.]

[법규46]

국민건강보험법

내용

제41조(요양급여)

-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검사
 2.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2.3.>
 1.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제1항제2호의 약제: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
- ③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3.>

내용

제42조(요양기관)

- ①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3.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회귀 필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요양급여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장비·인력 및 진료과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요양기관에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한다.
 1. 제2항 전단에 따른 인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2항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인정서를 반납한 경우
- ④ 제2항에 따라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 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에 대하여는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절차 및 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다른 요양기관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6.2.3.>
-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법규4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내용

【별표3】

본인부담상한액의 산정방법(제19조제4항 관련)

1. 본인부담상한액은 지역가입자의 세대별 보험료 부담수준 또는 직장 가입자의 개인별 보험료 부담수준(이하 "상한액기준보험료"라 한다)에 따라 그 금액을 달리한다. 이 경우 상한액기준보험료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은 나목에 따른 상한액기준보험료의 구간별로 가목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방법
 - 1) 계산식

$$\text{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 = \text{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 \times (1 + \text{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 2)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되, 그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100분의 5를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적용한다.
 - 3) 1)의 계산식에 따라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산정한 경우에 1만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 나.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단위 상한액기준보험료의 구간
 - 1) 지역가입자인 경우. 이 경우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과 같은 경우에는 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내용	
----	--

- [illegible]

내용

사)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

3. 본인부담상한액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이하 "120일 초과 입원"이라 한다)와 그 밖의 경우로 나누어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구분	본인부담상한액	
	120일 초과 입원	그 밖의 경우
1) 제2호나목1)가)의 경우	125만원	81만원
2) 제2호나목1)나)의 경우	157만원	101만원
3) 제2호나목1)다)의 경우	211만원	152만원
4) 제2호나목1)라)의 경우	280만원	
5) 제2호나목1)마)의 경우	350만원	
6) 제2호나목1)바)의 경우	430만원	
7) 제2호나목1)사)의 경우	580만원	

나.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경우

구분	본인부담상한액	
	120일 초과 입원	그 밖의 경우
1) 제2호나목1)가)의 경우	125만원	81만원
2) 제2호나목1)나)의 경우	157만원	101만원
3) 제2호나목1)다)의 경우	211만원	152만원
4) 제2호나목1)라)의 경우	280만원	
5) 제2호나목1)마)의 경우	350만원	
6) 제2호나목1)바)의 경우	430만원	
7) 제2호나목1)사)의 경우	580만원	

공직선거법

내용

제222조(선거소송)

-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제220조의 결정에 불복이있는 소청인(당선인을 포함한다)은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제220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날(제220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3.7., 2010.1.25.>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개정 2010.1.25.>

제223조(당선소송)

-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제52조제1항·제3항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선인을, 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1항·제2항, 제188조(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1항 내지 제4항, 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또는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그 당선인을 결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을,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각각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 2010.3.12.>
- ②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한 제220조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 또는 당선인인 피소청인(제2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피소청인인 경우에는 당선인을 포함한다)은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선인(제219조제2항 후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을,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3.7., 2010.1.25.>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국회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부의장중 1인을 피고로 한다.
<개정 2010.1.25.>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 될 당선인이 사퇴·사망하거나 제1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을, 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고등검찰청검사장을 피고로 한다.

[법규49]

한의학 육성법

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의학"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2. "한약사"란 한약의 생산[한약재(韓藥材) 재배를 포함한다]·가공·제조·조제·수입·판매·감정·보관 또는 그 밖에 한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3. "한약기술"이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한약제제,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 및 한약재 재배(우수 품종 개발을 포함한다)·제조·유통·보관 등 한의학과 관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한약"이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5. "한약재"란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약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10.22.]

[법규5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8., 2011.7.25., 2016.1.19.>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
 - 나.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 다.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 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 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내용

2.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제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3. "개인과외교습자"란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 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나. 제1호사목에 따른 시설
4.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가.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 나.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5. "학습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교습을 받는 자
 - 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
 - 다. 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 교습을 받는 자
6. "교습비등"이란 학습자가 다음 각 목의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이하 "교습비"라 한다)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이하 "기타경비"라 한다)를 말한다.
 - 가.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운영자"라 한다)
 - 나.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교습자"라 한다)
 - 다. 개인과외교습자

[전문개정 2007.12.21.]

[법규51]

공중위생관리법

내용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31., 2016.2.3.>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营业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营业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 나.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4. "이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营业을 말한다.
 5. "미용업"이라 함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营业을 말한다.
 6. "세탁업"이라 함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세탁하는 营业을 말한다.
 7. "위생관리용역업"이라 함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营业을 말한다.
 8. 삭제 <2015.12.22.>
-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 营业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법규52]

도로법

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 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 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 바.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하 생략)

[법규53]

식품위생법

내용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규54]

아동복지법

내용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1~9. (생략)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생략)

[법규55]

영유아보육법

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5. (생략) [전문개정 2007.10.17.]

[법규56]

유통산업발전법

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2.3.>

1~2. (생략)

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4~16. (생략)

[법규57]

초·중등교육법

내용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3.21.]

[법규 58]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내용

제 37조(보험 등의 불이익 금지)

이 법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사망한 사람과 보험금 수령인 또는 연금수급자를 보험금 또는 연금급여 지급시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내용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8., 2013. 3. 22., 2014. 3. 18., 2015. 7. 6., 2016. 12. 2.>

1. "감염병"이란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제1군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 가. 콜레라
 - 나. 장티푸스
 - 다. 파라티푸스
 - 라. 세균성이질
 -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바. A형간염
3. "제2군감염병"이란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 가. 디프테리아
 - 나. 백일해(百日咳)
 - 다. 파상풍(破傷風)
 - 라. 홍역(紅疫)
 - 마.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 바. 풍진(風疹)
 - 사. 폴리오
 - 아. B형간염
 - 자. 일본뇌염
 - 차. 수두(水痘)
 - 카.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타. 폐렴구균
4. "제3군감염병"이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 가. 말라리아
 - 나. 결핵(結核)
 - 다. 한센병
 - 라. 성홍열(猩紅熱)
 - 마. 수막구균성수막염(髓膜球菌性髓膜炎)
 - 바. 레지오넬라증
 - 사. 비브리오패혈증
 - 아. 발진티푸스
 - 자. 발진열(發疹熱)
 - 차. 찌꺼가무시증
 - 카. 랩토스피라증
 - 타. 브루셀라증
 - 파. 탄저(炭疽)
 - 하. 공수병(恐水病)

내용

- 거. 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 너. 인플루엔자
- 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러. 매독(梅毒)
- 머. 크로이츠펔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펔트-야콥병(vCJD)
- 버. C형간염
- 서.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어.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5~20. (생략)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 ①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5. 12. 29.>
 1.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3. 감염병환자등이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 ②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환자등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및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6.>
- ④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소속 부대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 ⑤ 제16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인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5. 7. 6., 2015. 12. 29.>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단 기준,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5. 7. 6.>

[법규6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내용

제70조(벌칙)

-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전문개정 2008. 6. 13.]

[법규 61]

전기통신사업법

내용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5. 19., 2013. 3. 23., 2013. 8. 13., 2014. 10. 15., 2017. 7. 26.>
1. (생략)
 2.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 3~14. (생략)

[법규 6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내용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 ①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요청에 관한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내용

제6조(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피해자로서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전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피해구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해당 피해금에 대한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공고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은 지체 없이 해당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요청 및 공고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 ④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전에 피해구제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0조(피해환급금의 결정·지급)

- ① 금융감독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자 및 그 금액을 결정하여 그 내역을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환급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피해환급금은 총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멸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의 총피해금액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피해금액으로 한다.
- ③ 금융감독원은 제2항에 따른 피해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금융회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피해환급금의 결정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Memo

Memo

Memo

Memo

Memo



본 약관은 100% 재생펄프를 사용하여 제작한 친환경 인쇄물입니다.

1588-5114
samsungfire.com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2019.04. 장기상품개발팀 인쇄)

www.samsungfire.com의 상품공시실 메뉴의 “보험상품공시실”에서도 약관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